

제 1572 호
1991. 6. 25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이 해 원
편집인 : 공 보 관 이 상 진
전 화 : 731-6111~3
인 쇄 : 한국컴퓨터산업(인쇄)주식회사
전 화 : 273-6111~3

시 보

차 례

● 주 례

제 2757 호	서울특별시청구청공무원교육원등의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3
제 2758 호	서울특별시립대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4
제 2759 호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	4
제 2760 호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	6
제 2761 호	서울특별시립청소년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	6
제 2762 호	서울특별시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	6
제 2763 호	서울특별시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7
제 2764 호	서울특별시녹지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7
제 2765 호	서울특별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7
제 2766 호	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7
제 2767 호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8
제 2768 호	서울특별시차량정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8
제 2769 호	서울특별시교통방송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	8

(이면계속)

장																				
람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질서앞에 혼란없고 질약앞에 가난없다”

제 2770 호	서울특별시한강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8
제 2771 호	서울특별시하수처리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	9
제 2772 호	서울특별시립근로사후생시설설치조례중개정조례	9
제 2773 호	서울특별시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	10
제 2774 호	서울특별시소방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10
제 2775 호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회조례중개정조례	11
규 칙		
제 2379 호	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12
제 2380 호	서울특별시외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16
제 2381 호	서울특별시하수처리장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17
제 2382 호	서울특별시한강공원관리사업소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18
제 2383 호	서울특별시소방서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18
제 2384 호	서울특별시체비지대부표등부파·징수조례시행규칙	18
훈 령		
제 716 호	서울특별시제해대책본부운영규정	35
고 시		
제 190 호	1991년도서울특별시추가경정예산고시	41
제 195 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	42
제 196 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및변경허가	43
공 고		
제 179 호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개정(안)입법예고	43
예 규		
제 533 호	서울특별시체비지관리및처분규정중개정규정	44
구 고 시		
제 11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동작)	45
제 12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동작)	45
제 12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중구)	45
제 13 호	주택건설사업(재건축)계획승인(용산)	47
제 13 호	토지세목추가고시(마포)	47
제 16 호	도시계획사업(도로)변경시행허가(도봉)	47
제 17 호	경정고시(도봉)	47
제 27 호	도시계획사업(도로및하수도)실시계획변경인가(구로)	48
구 공 고		
제 64 호	주택건설·대지조성등특업자영업정지해제공고(송파)	48
제 72 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영등포)	49
제 76 호	도시계획안공람공고(마포)	49
제 77 호	돈암2-2지구주택개발사업공사완료공고(성북)	50
제 177 호	부기과업지구지정공고(노원)	51
사 령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본청
구청공무원교육원등의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1. 6. 25

서울특별시시장 이해원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75호

서울특별시본청구청공무원교육원등의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본청구청공무원교육원등의지방
공무원정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본청지방공무원 정원표 중 5급정원내용
중 행정직 "168"을 "164"로, 임업직 "4"를
"5"로, 토목직 "15"를 "17"로 전기직 "2"를
"1"로, 토목 또는 건축직 "6"을 "7"로, 행
정·농업 또는 수산직 "1"을 "2"로, 행정·토
목 또는 건축직 "2"를 "1"로 하고 "토목·
화공 또는 기계직 "1"을 신설한다. 6급정원
"427"을 "438"로 하고 정원내용 중 행정직
"292"를 "301"로, 토목직 "39"를 "40"으로,
기계직 "14"를 "13"으로 임업직 "9"를
"10"으로 하고, "환경직1"을 신설한다. 7급
정원 "534"를 "538"로 하고, 정원내용 중
행정직 "385"를 "388"로 건축직 "18"을
"14"로, 지리적 "10"을 "15"로, 전기직 "12"
를 "13"으로, 화공직 "6"을 "7"로, 전산직
"8"을 "6"으로 한다. 8급정원내용 중 전산직
"6"을 "7"로, 기계직 "2"를 "1"로 한다.

별정직정원 "70"을 "69"로 하고 정원내
용 중 5급상당 "4"를 "3"으로(훈련계장
"1"을 삭제한다)한다. 기능직정원 "445"를
"453"으로 하고 정원내용 중 "7등급통신장
"2"를 "3"으로, 기계장 "6"을 "7"로, 전기
장 "5"를 "4"로 하며 8등급기계원 "1"을
"2"로 하고, "8등급전기원1, 기계원1"을 신

설하며, 10등급전기원 "11"을 "12"로, 기계
원 "19"를 "22"로(기계 "14"를 "16"으로, 연
사 "5"를 "6"으로), 사무보조원 "212"를
"220"으로(타자 "83"을 "86"으로, 조무
"127"을 "132"로)하고, 방호원 "46"을 "48"
로 하며, 합계정원 "1,806"을 "1,838"로 한다.
(별표1-2)

경찰국지방공무원정원표 중 기능직정원
"623"을 "629"로 하고 정원내용 중 10등급
중 전기원 "16"을 "17"로, 사무보조원
"443"을 "448"로(타자 "51"을 "56"으로)
하고 합계정원 "680"을 "686"으로 한다.
(별표4)

구청지방공무원정원표 5급정원내용 중
"행정·토목 또는 지리적22"를 삭제하고, "행
정 또는 토목22"를 신설하며, 6급정원
"1,595"를 "1,608"로 하며, 정원내용 중 행
정직 "1,215"를 "1,140"으로, 행정 또는 임
업직 "44"를 "50"으로 행정·농업 또는 축
산직 "4"를 "22"로, 토목 "66"을 "22"로,
"임업직1 및 수의직3"을 삭제하며, 행정 또는
기계직 "7"을 "9"로 토목 또는 전기직
"22"를 "44"로, 행정·수의 또는 보건직44와
행정 또는 토목직22 및 행정 또는 건축직
22를 신설하며, 7급정원 "1,960"을 "1,968"
로, 정원내용 중 행정직 "1,285"를 "1,289"
로, 임업직 "42"를 "47"로, 토목 또는 건축
직 "232"를 "229"로 하고, 기계직 "2"를 신
설하며, 8급정원 "3,000"을 "3,007"로 정원
내용중 농업직 "4"를 "5"로 임업직 "62"를
"67"로, 보건직 "99"를 "100"으로 한다.

9급정원 "1,999"를 "1,994"로 정원내용
중 행정직 "1,513"을 "1,504"로 기계 또는
전기직 "39"를 "40"으로, 전기직 "14"를
"13"으로, "농업직1"을 삭제하며, 임업직
"19"를 "22"로, 토목 또는 건축직 "212"를
"214"로 한다.

별정직정원 "284"를 "212"로, 정원내용
중 7급상당 "205"를 "106"으로(사회복지전
문요원 99"를 삭제한다) 8급상당 "42"를

"84"로, "염양사20 및 통합공과금요원22"를 신설한다)로 한다. "9급상당15(공과금요원)"을 삭제하며, 기능직정원 "6,097"을 "5,625"로 정원내용 중 "6등급:기계장1"을 신설하고 7등급전기장 "99"를 "97"로 기계장 "8"을 "18"로 하고 "통신장1"을 삭제하며, 8등급전기원 "40"을 "42"로 9등급 기계원 "4"를 "2"로 하고, 10등급운전원 "1,697"을 "2,167"로, 전기원 "390"을 "391"로, 기계원 "275"를 "294"로(기계 "246"을 "266"으로 영사 "29"를 "28"로) 사무보조원 "1,854"를 "1,857"로, (조무 "1,367"을 "1,370"으로), 방호원 "561"을 "581"로(방호 "561"을 "565"로 "경비16"을 신설한다) 농림원 "47"을 "53"으로 (원예 "47"을 "53"으로), 토목원 "22"를 "23"으로 하고 합계정원 "19,076"을 "19,555"로 한다.

(별표3)

공무원교육원 지방공무원정원표 중 기능직정원 "70"을 "72"로 하고 정원내용 중 10등급 운전원 "9"를 "11"로 하며, 합계정원 "95"를 "97"로 한다.

(별표4)

농촌지도소지방공무원정원표 중 기능직정원 "18"을 "20"으로 하고 정원내용 중 9등급 "농림원2(원예2)"를 신설하고 합계정원 "19"를 "21"로 한다.

부 칙

이 조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시립대학교 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1. 6. 25

서울특별시시장 이해원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758호

서울특별시립대학교설치

조례중개정조례

서울시립대학교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정원표 기능직정원 "63"을 "71"로 하고 정원내용 중 10등급운전원 "4"를 "6"으로 전기원 "2"를 "4"로 기계원 "3"을 "5"(기계 "3"을 "5"로)로 하고 방호 "7"을 "9"로 하며 합계정원 "141"을 "149"로 한다.

부 칙

이 조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1. 6. 25

서울특별시시장 이해원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759호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

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보건연구원, 지방공업연구원 또는 지방환경연구원"을 "지방보건연구원 또는 지방공업연구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환경부"를 "대기부·수질부"로 하며 동조제2항 중 "식품부장 및 환경부장"을 "식품부장·대기부장 및 수질부장"으로 "지방보건연구원·지방공업연구원 또는 지방환경연구원"을 "지방보건연구원 또는 지방공업연구원"으로 "지방축산기점"을 "지방농업연구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조사지도과·세균과"를 "세균과·조사지도과"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세균과는 각종 식품의 세균학적 검사와 식중독검사 및 바이러스 등 세균의 시험연구와 부내 디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③조사지도과는 작구 보건소 검사요원의 교육훈련·보급사 특출검사 및 각종 전염

병균의 시험연구를 분장한다.

제8조제1항 내지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제8조(약품부) ①약품부에 약품화학과, 독성약품과, 생약과 및 효소과를 두고 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②약품화학과는 소화기계의 약품, 비타민, 효소제 및 효소제 등 일반의약품의 시험 분석 및 연구와 부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③독성약품과는 마약, 한의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신경계용의약품(해열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 살균소독제, 의료용구 및 위생용품 등의 시험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생약과는 생약 및 복합생약제, 이와 유사한 제제 등의 시험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요품과는 화장품, 의약부의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제제의 시험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9조제1항 중 “첨가물과 및 응용수질과”를 “첨가물과·응용수질과 및 식품안전성과”로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식품안전성과는 식품 등의 규격검토, 식품의 잔류농약검사, 할암성물질검사 및 안전성에 관련된 식품 등의 전반적인 검사 및 연구사항을 분장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0조의2를 신설한다.

제10조(대기부) ①대기부에 대기보전과, 환경조사과, 소음진동과를 두고 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②대기보전과는 공장, 사업장의 조업으로 인한 대기오염 물질, 유해가스 등 대기오염원에 관한 사항과 부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③환경조사과는 대기자동측정소 운영과 대기 반과동 및 수동측정소의 운영, 지하

공간의 공기오염도검사 등 대기환경 전반에 관한 조사 연구사항을 분장한다.

④소음진동과는 산업장의 소음 진동측정 및 발생원의 조사연구, 건축공사장의 소음 및 지하구조물의 진동검사, 도로소음 및 생활소음(항공기, 철도 등)의 검사, 소음 및 진동의 방지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등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0조의2(수질부) ①수질부에 수질보전과, 환경생태과, 폐기물과, 독성조사과를 두고 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②수질보전과는 공장, 사업장의 조업으로 인한 폐수 및 하천오염과 공업용수 등에 대한 검사 및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과 부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③환경생태과는 환경지표생물에 관한 조사 연구, 수서생물 및 오염기생연구, 수역의 부영양화 및 조류생장조사, 환경오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의 연구와 수질자동측정소의 운영, 한강 등 수질환경 전반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폐기물과는 폐기물의 검사,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 방류수검사, 폐기물 관련사항의 검사 및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독성조사과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된 독극물의 검사 환경 유해물질의 독성실험 토양오염도 검사 특수유기 화합물질의 변이원성 및 발암성 물질의 검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방축산기과”를 “지방농업연구관”으로 한다.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병연구관) 각부에 두는 병연구관은 원장의 명을 받아 연구조사 업무를 담당한다.

(별표)

경원표 중 연구직 정원 “107”을 “138”로

하고 정원내용 중 연구관 "25"를 "31"로 연구사 "82"를 "107"로 하며 8급정원 "5"를 "6"으로 하고 정원내용 중 "전산직1"을 신설하며 별정직 정원 "46"을 "45"로 하고 정원내용 중 8급상당 "25"를 "24"로 "(공해측정기사20"을 "공해측정기사19)"로 하며 기능직 정원 "29"를 "36"으로 하고 정원내용 중 10등급전기원 "1"을 "2"로 사무보조원 "9"를 "15"로, (타자 "1"을 "2"로, 조무 "7"을 "12"로 하며 합계정원 "233"을 "271"로 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1. 6. 25

서울특별시장 이해원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760호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시립병원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별표1) 지방공무원정원표 중 7급 정원 "122"를 "123"으로 하고 정원내용 중 보건직 "10"을 "11"로 하며, 8급정원 "219"를 "224"로 하고 정원내용 중 간호직 "186"을 "191"로 하며 기능직정원 "321"을 "326"으로 하고 정원내용 중 10등급 간호조무 "5"를 "10"으로 하고, 합계정원 "822"를 "833"으로 한다.

제6조(별표2) 병원별 진료과목 중 일반병원의 진료과목의 방사선과 다음에 정신과, 해부정리과를 신설하고(각각 총 "14"를 각각 총 "16"개로) 특수병원, 아동병원의 진료과목 중 "신경정신과"를 "신경과·정신과"로 하고 마취과 다음에 "재활의학과"를 신설하며, (총 "8"개를 총 "10"개로) 서대문병원 진료과목 중 "내과"를 "결핵과"로 "외과"를 "일반외과"로 하고 방사선과 다음에 "흉부외과"를 신설하며 (총 "7"개를 총 "8"개로) 정신병원

진료과목중 신경과 다음에 "방사선과"를 신설하며, (총 "3"개를 총 "4"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청소년사업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1. 6. 25

서울특별시장 이해원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761호

서울특별시립청소년사업관설치

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청소년사업관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정원표 중 별정직정원 "7"을 "8"로 하고 정원내용 중 "8급상당1(자료조사원)"을 신설하며 기능직정원 "10"을 "11"로 하고 정원내용 중 10등급 사무보조원 "4"를 "5"로 ("조무3"을 "조무4"로)하며 합계정원 "21"을 "23"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1. 6. 25

서울특별시장 이해원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762호

서울특별시종합건설본부설치

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정원표 가. 공사본부의 기능직정원 "27"을 "28"로 하고 정원내용 중 10등급윤건원 "8"을 "9"로 하며 합계정원 "259"를 "260"

으로 한다.

정원표 나. 지원사업소(건설자재사업소) 기능직 정원 "77"을 "78"로 하고 정원내용 중 10등급윤전원 "2"를 "3"으로 하며 합계 정원 "95"를 "96"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1. 6. 25

서울특별시장 이해원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763호

서울특별시건설사업소설치

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건설사업소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공무원의 정원) 별표 건설사업소지방공무원 정원표 중 7급정원 "12"를 "14"로 하고 정원내용 중 "기계직2"를 신설하며, 8급정원 "27"을 "28"로 하고 정원내용 중 행정직 "12"를 "11"로 하며 "기계직2"를 신설하며 9급정원 "12"를 "13"으로 하고 정원내용 중 행정직 "2"를 "3"으로 하며 기능직정원 "279"를 "268"로 하고 정원내용 중 7등급기계장 "101"을 "91"로 10등급 건축원 "1"을 삭제하며, 합계정원 "346"을 "339"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녹지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1. 6. 25

서울특별시장 이해원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764호

서울특별시녹지사업소설치

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녹지사업소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정원표 중 기능직정원 "40"을 "42"로 하고 정원내용 중 "7등급 기계장1"을 신설하고 10등급 "기계원1"을 신설하며 합계정원 "68"을 "70"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1. 6. 25

서울특별시장 이해원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765호

서울특별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

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정원표 중 기능직정원 "83"을 "84"로 하고 정원내용 중 10등급윤전원 "6"을 "7"로 하며 합계정원 "117"을 "118"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1. 6. 25

서울특별시장 이해원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766호

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별표)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지방공무원정원표의 기능직정원 "228"을 "229"로 하고 정원내용 중 10등급윤전원 "12"

를 "13"으로 하며 합계정원 "328"을 "329"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1. 6. 25

서울특별시장 이해원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767호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소설치
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소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별표) 지방공무원정원표의 7급정원 "20"을 "21"로 하고 정원내용 중 행정직 "15"를 "16"으로 하며, 8급정원 "61"을 "63"으로 하고 정원내용 중 행정직 "58"을 "60"으로 하며 기능직정원 "72"를 "83"으로 하고 정원내용 중 10등급사무보조원 "53"을 "63"으로("전산 10"을 신설)하고, 10등급방호 "12"를 "13"으로 하며, 합계정원 "204"를 "218"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차량정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1. 6. 25

서울특별시장 이해원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768호

서울특별시차량정비사업소설치
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차량정비사업소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별표) 지방공무원정원표의 기능직

정원 "150"을 "146"으로 하고 정원내용 중 6등급기계장 "5"를 "4"로, 7등급기계장 "17"을 "15"로 하며, 10등급방호 "9"를 "8"로 하고, 합계정원 "168"을 "164"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교통방송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1. 6. 25

서울특별시장 이해원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769호

서울특별시교통방송본부설치
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교통방송본부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별표) 지방공무원정원표의 기능직정원 "33"을 "36"으로 하고 정원내용 중 10등급 "30"을 "33"으로, 운전원 "12"를 "15"로 하며 합계정원 "60"을 "63"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한강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1. 6. 25

서울특별시장 이해원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770호

서울특별시한강공원관리사업소설치
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한강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별표) 지방공무원정원표의 기능직 정원 "96"을 "98"로 하고 정원내용 중

10등급운전원 "20"을 "22"로 하고 합계
정원 "221"을 "223"으로 한다.

부 칙

이 조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하수처
리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본 이에 공포한다.

1991. 6. 25

서울특별시장 이해원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771호

서울특별시하수처리장설치

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하수처리장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별표) 지방공무원정원표 중양하수처
리장 중 6급정원 "9"를 "10"으로 하고,
정원내용 중 화공직 "1"을 "2"로 하며, 7
급정원 "15"를 "19"로 하고, 정원내용 중
행정직 "3"을 "4"로, 토목직 "2"를 "3"으
로, 화공직 "2"를 "3"으로 하고, "기계
도는 전기직 "1"을 신설하며, 8급정원
"17"을 "16"으로 하고 정원내용 중 행정
직 "4"를 "3"으로, 화공직 "3"을 "2"로,
기계직 "4"를 "5"로 하며, 별정직정원
"4"를 "5"로 하고, 정원내용 중 7급상당
"2"를 "3"(“영양사1”을 신설)으로 하며,
기능직정원 "298"을 "339"로 하고, 정원
내용 6등급 중 "기계장1"을 신설하며, 7
등급중 "기계장1" 및 "전기장1"을 신설
하고, 10등급 중 기계원 "73"을 "96"으
로, 전기원 "20"을 "35"로 하고 합계정원
"355"를 "401"로 한다.

난지하수처리장 중 기능직정원 "96"을
"104"로 하고, 정원내용 7등급 중 "전기
장1"을 신설하며, 10등급 중 전기원 "9"
를 "12"로, 기계원 "15"를 "18"로, 운전
원 "5"를 "6"으로 하고, 별정직정원 "1"
을 "2"로 하고, 정원내용 중 "7급상당1"
(“영양사 1”을 신설)을 신설하며, 합계정

원 "121"을 "130"으로 한다.

안양하수처리장 중 별정직정원 "1"을
"2"로 하고 정원내용 중 "7급상당1"(“영
양사1”신설)을 신설하며, 합계정원 "164"
를 "165"로 한다.

탄천하수처리장 중 별정직정원 "3"을
"4"로 하고, 정원내용 7급상당 "2"를 "3"
(“영양사1”신설)으로 하며, 기능직정원
"159"를 "160"으로 하고 정원내용 중 10
등급운전원 "4"를 "5"로 하며, 합계정원
"204"를 "206"으로 한다.

제5조제4항제3호 중 “분뇨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를 “분뇨처리시설·정화조오니처
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로 한다.

부 칙

이 조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근
로자후생시설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
포한다.

1991. 6. 25

서울특별시장 이해원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772호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설치

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2)

부녀복지관 정원표 중 기능직정원 "52"
를 "54"로 하고 정원내용 중 10등급 "48"
을 "50"으로 사무보조원 "29"를 "31"로(조
무 "23"을 "25"로)하며, 합계정원 "130"을
"132"로 한다.

부 칙

이 조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소방
시설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1. 6. 25

서울특별시장 이해원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773호
 서울특별시소방서설치
 조례증개정조례

서울특별시소방서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별표1) 지방공무원 정원표 중 소방직정원 "3,238"을 "3,357"로 하고, 정원내용 중 소방정 "14"를 "15"로, 소방령 "30"을 "32"로, 소방경 "72"를 "77"로, 소방위 "103"을 "110"으로, 소방장 "301"을 "316"으로, 소방교 "754"를 "786"으로 소방사 "1,964"를 "2,021"로 하고, 기능직정원 "86"을 "94"로 하며, 정원내용 중 10등급기계원 "21"을 "23"으로, 사무보조원 "65"를 "71"로(타자 "20"을 "22"로, 조무 "42"를 "46"으로)하고, 합계정원 "3,399"를 "3,526"으로 한다.

제5조의(별표2) 소방서의 명칭 및 관할구역 중 영등포소방서 관할구역 "영등포구 일원 및 구로구 일부"를 "영등포구 일원"으로 하고, 강서소방서 관할구역 "강서구

·양천구 일원 및 구로구 일부"를 "강서구 및 양천구 일원"으로 하며, 명칭란에 "구로소방서"를 신설하고, 관할구역란에 "구로구 일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소방학교설치조례증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1. 6. 25

서울특별시시장 이해원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774호
 서울특별시소방학교설치
 조례증개정조례

서울특별시소방학교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교장) 제1항 중 "지방소방정"을 "지방소방감"으로 하고

제4조(별표) 소방공무원 정원표를 다음과 같이 하며,

〈별 표〉 소방공무원 정원표

계 급 별	정 원	정 원 내 용
소 방 감	1	
소 방 정	2	
소 방 령	6	
소 방 경	4	
소 방 위	5	
소 방 장	4	
소 방 교	4	
소 방 사	3	
별 정 직	1	7급상당(영양사)
기 능 직	9	10등급:기계원1(기계1), 사무보조원6(타자1, 조무5), 방호2
합 계	39명	

제5조 중 "지방소방령"을 "지방소방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증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1. 6. 24

서울특별시시장 이해원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775호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한다.

제4조(상임위원회와 위원장수) 의회 내에 설치하는 상임위원회 및 각 위원회별 위원장수는 다음과 같다.

- 1. 의회운영위원회 14인
- 2. 내무교육위원회 21인
- 3. 재무경제위원회 22인
- 4. 사회보건위원회 22인
- 5. 생활환경위원회 22인
- 6. 건설위원회 22인
- 7. 교통위원회 22인

제5조(상임위원회별 소관) ①각 상임위원회별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 1. 의회운영위원회
 -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 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2. 내무교육위원회
 - 가. 감사관 공보관 소관에 관한 사항
 - 나. 내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민방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라. 소방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마. 시교육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바. 기타 소속기관 중 시예산에 관련된 사항
- 3. 재무경제위원회

- 가. 기획관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재무국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산업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관한 사항

4. 생활환경위원회

- 가. 시민생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환경녹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하수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라. 상수도사업본부에 관한 사항

5. 사회보건위원회

- 가. 보건사회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가정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문화관광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라. 강남병원의 관한 사항

6. 건설위원회

- 가. 도시계획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도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주택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라. 종합건설본부에 관한 사항
- 마. 도시개발공사에 관한 사항

7. 교통위원회

- 가. 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지하철건설본부에 관한 사항
- 다. 지하철공사에 관한 사항
- 라.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사항

②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상임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정한다.

제6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의원은 하나 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②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7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각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한다. ②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8조(상임위원의 임기) ①각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②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상임위원장) ①각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본회의에서 의장·부의장선거의 예에 의하여 선출한다.

③상임위원회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10조(특별위원회) ①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③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④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22인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예산결산 특별위원회) ①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둔다.

②제10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준용한다.

제12조(특별위원회 위원장) ①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무를 사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한

다.

제14조(간사) ①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②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5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사결과와 결과를 소관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의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이 조례는 법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회초집회일부부터 시행한다.

②(의회사무국설치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사무국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내무위원회"를 "내무교육위원회"로 "환경위원회"를 "생활환경위원회"로, "교육사회위원회"를 "사회보건위원회"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건설위원회"로 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91. 6. 25

서울특별시시장 이해원 ㉔

◎서울특별시규칙제2379호

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보계

가.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나. 강연(상설순회홍보반) 및 영상, 간행물 홍보

다. 시경홍보물 제작심의

라. 민간사회단체 지도육성(공보분야)

마. 월간 이하 정기간행물 등록 관리

바. 시보발간

사. 전시홍보 종합계획수립 집행

아. 기타 관내 타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보도계

가. 시경보도계획 수립

나. 시경보도자료 수집 및 분석

다. 홍보매체특집 및 인터뷰

라. 전시홍보(서울발전상 사진전 개최 등)

마. 시경홍보영화 제작

바. 유선방송업무 관리

사. 청내 신문구독 및 신문광고 조정
어, 방송모니터실, 기자실, 사진실 운영

제7조제2항제2호 중 바목 및 사목을 삭제한다.

제18조의제2항제2호 중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행정서사업 지도감독

제26조제2항제4호 중 라목 및 마목을 삭제한다.

제28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작업관리2계

가. 분뇨수거운반 및 정화조청소 종합계획

나. 분뇨수거운반 및 정화조청소 작업관리지도 감독

다. 정화조관리 및 협소개량사업 총괄

라. 하수처리장 및 위생처리장 이용에 관한 사항

마. 관노정화조 설계, 시공입찰 및 시

도감독

제29조제1항 중 "시설관리계 및 처리시설계를 두고"를 "시설관리계, 처리시설1계 및 처리시설2계를 두고"로 하고 "시설관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처리시설계장은 지방토목기과 또는 지방화공기과로"를 "시설관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처리시설1계장은 지방토목기과 또는 지방화공기과로, 처리시설2계장은 지방토목기과·지방화공기과 또는 지방기계기과로"로 한다.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설관리계

가. 청소시설기본계획, 부지매입 및 재산관리 총괄

나. 청소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다. 사업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라. 관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처리시설1계

가. 쓰레기최종처리시설계획(난지도매립지 안정화계획, 김포매립지 건설계획, 분뇨·정화조오니처리장 건설계획 등)

나. 수송도로건설에 관한 사항

다. 난지도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라. 쓰레기 최종처리기술 개발 및 연구

3. 처리시설2계

가. 쓰레기중간처리 시설계획(중계처리장 건설계획, 소각장 건설계획)

나. 수송장비개선에 관한 사항

다. 중간처리시설 투자제원관리 및 자문위원회 운영

라. 쓰레기중간처리기술 개발 및 연구

제32조제2항제1호 다목 중 "부랑인(성인남자)"을 "부랑인(남·녀포함)"으로 하고 "수용업무"를 "수용업무(남자수용시설)"로 하며, "라목 및 마목"을 "마목 및 바목"으로 하고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p>라. 가정의례업무 중 묘지, 화장, 장묘 등의 시설유지 및 관리</p> <p>제35조제2항제1호 다목 끝에 “(단:묘지, 화장, 장묘업무 중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제외)”를 삽입한다.</p> <p>제38조제2항제1호 중 타목을 파목으로 하고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다. 유통구조의 개선책 및 유통근대화 추진위원회 운영</p> <p>제4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① 문화파에 문화계·예술계 및 문화사업체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p> <p>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② 문화파의 개별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문화계</p> <p>가. 문화·예술진흥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p> <p>나. 문예진흥기금 관리 운영</p> <p>다. 서용시문화상 시상 및 운영</p> <p>라. 출판사, 인쇄소 및 종무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p> <p>마. 도서관 업무에 관한 사항</p> <p>바. 국내 다른 파 및 파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p> <p>2. 예술계</p> <p>가.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 및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운영</p> <p>나. 공연예술에 관한 사항 및 공연장 지도감독</p> <p>다. 음반 및 비디오 판매업소 지도감독 및 건전가요 보급 육성</p> <p>라. 문화공간 시설확충 및 지도감독(대학로 등)</p> <p>마. 세종문화회관 지도감독</p> <p>바. 시범미술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p> <p>3. 문화사업계</p> <p>가. 서울 600년 문화사업 추진</p>	<p>나. 시사편찬사업 및 시사편찬위원회 운영</p> <p>다. 시민문화축제에 관한 사항(올림픽 기념행사 등 문화행사 전반)</p> <p>라. 문화정책 및 전통문화예술 유산의 발굴, 수집, 보존에 관한 사항</p> <p>제47조제2항제4호 중 바목 및 사목을 사목 및 아목으로 하고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바. 도심기능분산(도심 부격격 시설이전)기본계획 수립 조정</p> <p>제50조의제2항제2호 중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바. 부동산중개업 지도감독</p> <p>제5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1. 주택행정계</p> <p>가. 주택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p> <p>나. 민영주택 사업계획승인에 대한 일반업무지침 수립</p> <p>다. 민영주택 투자과열지구 지정승인</p> <p>라. 공공주택 사업계획의 승인 및 협의</p> <p>마.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계획 수립</p> <p>바. 주택자재 생산업체 품질검사 지도 감독</p> <p>사. 국내 다른 파 및 파내 다른 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p> <p>2. 주택계획계</p> <p>가. 주택건설 기본운영계획의 수립</p> <p>나. 시건설주택건설에 따른 심사분석</p> <p>다. 주택사업비 특별회계 예산의 총괄 조정</p> <p>라. 국민주택자금 기체 및 상환</p> <p>마. 주택통제관리</p> <p>3. 임대호보계</p> <p>가. 전(월)세입자 주거안정 종합대책 수립시행</p> <p>나. 전(월)세 가격 안정대책 수립 시행</p> <p>다. 전월세 유자급 지원</p> <p>라. 주택상담실운영(상담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p>
--	---

<p>4. 주택관리계</p> <p>가. 국민주택비 특별회계 재산관리 처분</p> <p>나. 국민주택비 특별회계 세입조정, 정수 및 채납처분</p> <p>다. 시립 주택임주자 선정 및 공급승인</p> <p>라. 시건설 주택 전매행위 등 관리</p> <p>마. 영구임대주택 공급지원, 입주자선정 관리</p> <p>바. 시민아파트 정리 및 관리</p> <p>사. 주택관리업자 면허 및 관리</p> <p>아. 공동주택 관리주체 인가 관리</p> <p>자. 공동주택 준공 후 관리</p> <p>제5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1. 개량계획계</p> <p>가. 주택개량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업무의 계획수립과 통제</p> <p>나. 기존무허가건물 관리의 지도감독</p> <p>다. 주택개발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특정건축물정리비 특별회계의 세입조정, 예산편성운영 및 AID차관 업무</p> <p>라. 재개발구역 및 주거환경개선 지구 내의 재산관리(국공유지 양수 및 분양지, 체비지 매각)</p> <p>마.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의 사유지 수용 및 보상</p> <p>바. 국민주택건설자금 기채 및 용자금 관리</p> <p>사. 철거민이주정착 및 가수용시설계획 수립</p> <p>아. 서울시가격평가위원회 및 공동주택 분양가 심의위원회 운영</p> <p>자. 주거환경개선사업총괄(지구지정신청, 관련규정 제정)</p> <p>차. 파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p> <p>2. 개량1계(한강 이남지역 업무)</p> <p>가. 재개발사업의 도시계획입안 및 상정총괄</p>	<p>나.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입안 및 상정</p> <p>다. 재개발사업계획 수립 및 결정고시</p> <p>라.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수립 및 도시계획입안과 결정고시</p> <p>마. 재개발사업구역 지정승인 고시</p> <p>바. 재개발사업지구 관리처분계획수립 및 사업시행에 따른 지도감독</p> <p>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에 따른 지도감독</p> <p>아. 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업무의 지도감독</p> <p>자. 재개발사업지구 내 행위완화업무의 지도감독</p> <p>차. 재개발구역 및 주거환경개선지구의 환경정비 지도감독과 총괄</p> <p>카. 특정건축물 양성과 지도감독</p> <p>타.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구역 내 위험시설물 지도감독 총괄</p> <p>3. 개량2계(한강 이북지역 업무)</p> <p>가. 재개발사업의 도시계획입안 및 상정</p> <p>나.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입안 및 상정 총괄</p> <p>다. 재개발사업계획 수립 및 결정고시</p> <p>라.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입안과 결정고시</p> <p>마. 재개발구역 지적승인고시</p> <p>바. 재개발사업지구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에 따른 지도감독</p> <p>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에 따른 지도감독</p> <p>아. 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업무의 지도감독</p> <p>자. 재개발사업지구 내 행위완화 업무의 지도감독</p> <p>차. 재개발구역 및 주거환경개선지구의 환경정비 지도감독</p> <p>카. 특정건축물 양성과 지도감독</p>
---	--

다.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구역 내 위험시설을 지도감독 총괄

4. 단속계
 가. 신발생부허가 건물의 단속 및 철거 계획
 나. 무허가건물 신발생 예방계획 및 지도계몽
 다.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라. 항공처리결과에 의한 원도수정
 마. 항공사진에 의한 도면제작 및 판리
 바. 항공도의 다목적 활용 및 보급

제54조제2항제4호 중 라목을 삭제하고 다목을 라목으로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중 라목을 삭제하고 다목내지 카목을 라목 내지 차목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원과에 공원행정계, 공원개발계 및 공원관리계를 두고, 공원행정계장은 지방행정사무판으로, 공원개발계장 및 공원관리계장은 지방임업기좌로 보한다.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원행정계
 가. 공원 관련예산 총괄 및 공원재산 관리
 나. 공원세입 증대 및 세입금 관리총괄
 다. 공원 관련법령, 조례개정 에 관한 사항
 라. 공원사업소 및 시설관리공단 공원 업무지도감독
 마. 국소관행정의 종합조정 및 국내 타과, 타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공원개발계
 가. 공원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나. 대단위 공업개발사업 총괄
 다. 도시계획사업(공원조성) 결정에 따른 운영 총괄 및 타과협의사항
 라. 국립공원의 개발 관리에 관한 사항
 마. 강북지역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공원전용사용허가, 동상·기념물 등 시설물 관리 등

3. 공원관리계

가. 공원관리계획 총괄
 나. 공원 내 사유지 보상계획 수립
 다. 민자투자공원조성 활성화 대책 수립
 라. 공원재산의 관리(지적정리·동기)
 마. 강남지역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 공원전용 사용허가, 동상·기념물 등 시설물 관리 등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외곽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91. 6. 25
 서울특별시장 이해원 ㉔

●서울특별시규칙제2380호
 서울특별시외곽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외곽구사무분장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동정계 분장사무 중 사목 “행정 서사 허가 및 부동산 중개업 허가감독”을 “행정서가 허가 및 지도감독”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사회계 및 보험연금계”를 “사회계·노정계(종로구, 중구, 성동구, 구로구, 영등포구 및 강남구에 한한다) 및 보험연금계”로, 동조제2항제1호 라목 중 “부방인단속, 수용보호”를 “부방인단속(남녀포합), 수용보호(남자수용시설)”로, “마목 내지 아목”을 “바목 내지 자목”으로 하고,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다. 가정의례업무 중 묘지, 화장, 장묘 등의 시설유지 및 관리

동조제2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노정계
 가. 노동조합 설립·변경신고 처리 등에 관한 사항
 나. 노동조합규약의 변경·보안명령 등 업무지도
 다. 노동정의 예방 및 조정지도

라. 구인·구직 수요조사 및 취업알선
 다. 직업안내소 허가 및 지도·감독
 바.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사. 시설위탁직업훈련원 지도·감독

제10조의2(가정복지과) 제2항제1호 라목골
 에 “(단:묘지, 화장, 장묘업무 중 시설관
 리에 관한 사항 제외)”를 삽입한다.

제14조제1항 중 “서무계·작업계 및 위생설
 비계를 두고, 제장은 지방행정주사로”를
 “서무계·작업계·장비관리계(성동구·마포
 구에 한한다) 및 위생설비계를 두고, 서
 무계장·작업계장 및 위생설비계장은 지방
 행정주사로, 장비관리계장은 지방행정주
 사 또는 지방기계기사”로 하며, 동조제2
 항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장비관리계

- 가. 청소차량, 운전원 및 장비관리
- 나. 청소관계 기계·기구류의 개수수선
- 다. 차량의 유류 불출관리
- 라. 청소장비의 소독

제16조의2 제2항제2호(토지조사계)에 “아”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부동산중개업 허가 및 지도감독

제21조제1항 중 “공원계·녹지계 및 공원관
 리계(종로구에 한한다)”를 “공원계·녹지
 계·공원관리계(종로구·노원구 및 관악구
 에 한한다) 및 녹지관리계(서초구·은평구
 및 강동구에 한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
 제3호중 “가목 내지 라목의 시설근린공
 원”을 “도시공원”으로 하고, “마. 관악산
 및 낙성대 시설유지 관리·지도단속 등 총
 괄(관악구에 한함)”을 추가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녹지관리계

- 가. 개발제한구역내 관리총괄
- 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내 행
 위·승인허가 및 협의(건축허가 제외)
- 다. 산림훼손, 벌벌자 및 부정인산물 단
 속 등 산림사범 업무에 관한 사항

라. 미시설공원(일야) 및 미시설녹지
 보호관리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하수처리장사무분장규칙중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91. 6. 25

서울특별시장 이해원 ㉔

◎서울특별시규칙제2381호

서울특별시하수처리장사무분장
 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하수처리장사무분장규칙 중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처리1계·처리2계 및 처리3
 계(중랑하수처리장에 한함)을 두고”를
 “처리1계·처리2계·위생처리1계 및 위생
 처리2계(위생처리1·2계는 중랑하수처
 리장에 한함)을 두고”로 하고

동조제3항제3호 중 “처리3계”를 “위생처
 리1계”로 하고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기타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동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위생처리2계

- 가. 정화조오니의 위생적 처리
- 나. 정화조오니처리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전
- 다. 정화조오니처리시설의 보수개량 및
 증설계획
- 라. 정화조오니처리장에 투입되는 정화
 조오니 및 정화조차량 단속
- 마. 부산물관리 및 판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하수처리장사무분장규
 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91. 6. 25

서울특별시장 이해원 ㉔

●서울특별시규칙제2382호

서울특별시간강공원관리사업소

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제3조제2항제2호 중 "마목 및 바목"을 다
옴과 같이 신설한다.

다. 고수부지내 공원사용료 징수

나. 지구내 간이매점 관리

제4조제2항제2호 "다목 라목 및 바목"을
삭제하고, "마목"을 "다목"으로 "사목 내
지 자목"을 "라목 내지 바목"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가목 및 다목"을 삭제하
고, "나목"을 "가목"으로 하며 "라목 내
지 아목"을 "나목 내지 바목"으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 "나목"을 삭제하고, "다목
내지 바목"을 "나목 내지 마목"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소방서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을 이에 공포한다.

1991. 6. 25

서울특별시장 이해원 ㉔

●서울특별시규칙제2383호

서울특별시소방서사무분장

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소방서사무분장규칙 중 다옴
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의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체비지대부료등부과·징수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91. 6. 25

서울특별시장 이해원 ㉔

●서울특별시규칙제2384호

서울특별시체비지대부료등부과·징수

조례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체비지
대부료등부과·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
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부료의 부과절차) ①조례 제5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대부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현장조사와 건축물관리대장,
기존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을 확인한 후,
대부료부과대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
호서식에 의한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
다.

②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안내문을 받은
자가 체비지를 대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
지 제3호서식에 의한 체비지대부신청서
를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
대부신청을 받아 체비지대부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체비
지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비지
대부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대부료부과를
위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3조(변상금의 부과절차) 조례 제5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변상금을 부
과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안내문을 송부한 후, 체비지를 무단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기간에 따라 변
상금부과를 위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야 한다.

제4조(납입고지서) 조례 제7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한 대부료 및 변상금의 납입고지
서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
에 의한다.

제5조(대부료 등의 관리대장 비치) ①시장
은 대부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별지 제7
호서식에 의한 체비지대장 정리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체비지대부계약 처리
대장 및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체비지
대부료징수부록 작성·비치한다.

〈별 표〉 소방관파출소의 명칭위치와 관할구역			
서 별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중로소방서	새중로소방관 파출소	중로구 수송동 146-2	중로구중 : 중학구, 수송동, 전지동, 관훈동, 청진동, 공평동, 종로1가, 서원동 중구중 : 북창동, 소공동, 태평로2가, 남대문로1·2·3·4·5가, 서소문동, 경동, 순화동, 의주로1·2가, 중림동, 만리동1·2가, 봉래동1·2가, 회현동1·2·3가, 남창동, 무교동, 다동 태평로1가, 을지로1·2가, 삼각동, 수하동, 강교동, 수표동, 명동1·2가, 저동1가, 남산동1·2·3가, 충성로1가, 충무로1·2가
	신교소방관 파출소	중로구 신교동 70-2	중로구중 : 구기동, 평창동, 부암동, 홍지동, 신영동, 청운동, 신교동, 효자동, 공평동, 창성동, 통인동, 누상동, 누하동, 옥인동, 무악동, 체부동, 필운동, 내자동, 사격동, 통의동, 적선동, 교남동, 평동, 송월동, 흥파동, 교북동, 행촌동, 도림동, 당주동, 내수동, 신문로1·2가, 새종로동
	종로소방관 파출소	중로구 묘동 59-5	중로구중 : 팔판동, 삼정동, 안국동, 소격동, 화동, 사간동, 송현동, 가회동, 운니동, 경운동, 익선동, 낙원동, 인사동, 종로2가, 관철동, 훈정동, 봉익동, 묘동, 돈의동, 종로3가, 관수동, 장사동, 와룡동, 계동, 계동, 원서동, 권농동
서대문소방관 파출소	서대문구 미군동 165	서대문구중 : 현저동, 냉천동, 천연동, 옥천동, 영천동, 충정로2·3가, 합동, 미군동, 북아현동	
연건소방관 파출소	중로구 연건동 34-1	중로구중 : 해화동, 명륜동1·2·3·4가, 연건동, 동승동, 원남동, 인의동, 예지동, 연지동, 효재동, 종로4가, 종로5가중 85, 87, 88, 89, 90, 91, 92, 93, 72, 94, 95, 96, 97, 98, 100, 102, 103, 104, 110,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38, 395, 398번지	
중부소방서	무학소방관 파출소	중구 무학동 43-7	중로구중 : 창신동, 승인동 중구중 : 광학동, 홍인동, 무학동, 신당동, 장충동 1·2가
	을지로소방관 파출소	중구 을지로7가	중구중 : 주교동, 방산동, 을지로5·6·7가, 오장동, 예관동, 충무로5가, 광희동1·2가, 쌍림동, 목정동 중로구중 : 이화동, 충신동, 종로6가, 종로5가(종로5가 중 85, 87, 88, 89, 90, 91, 92, 93, 72,

서 별	명 칭	위 치	관 합 구 역
중부소방서	울지로소방관 파출소	중구 울지로7가	94, 95, 96, 97, 98, 100, 102, 103, 104, 110,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38, 395, 398번지 제외)
	용두소방관 파출소	동대문구 용두 동 112-4	동대문구중 : 신설동, 용두동(용두2동), 계기동 (계기2동)
	충무소방관 파출소	중구 충무로3가 40-6	중구중 : 임정동, 산림동, 울지로3·4가, 저동2가, 초동, 인현동1·2가, 충무로3·4가, 필동1·2·3 가, 남학동, 주자동, 여장동
성동소방서	구의소방관 파출소	성동구 구의동 253-23	성동구중 : 구의동, 광장동, 재양동, 모전동
	성수소방관 파출소	성동구 송정동 81-8	성동구중 : 성수동1·2가, 화양동, 송정동
	농동소방관 파출소	성동구 농동 316-3	성동구중 : 농동, 군자동, 증곡동
	행당소방관 파출소	성동구 도선동 35	성동구중 : 하왕십리동, 상왕십리동, 마장동, 홍 익동, 도선동, 행당동, 사근동, 용담동
	금호소방관 파출소	성동구 금호동 1가 179-3	성동구중 : 용문동, 옥수동, 금호동1·2·3·4가
용산소방서	한강로소방관 파출소	용산구 한강로 2-89	용산구중 : 서계동, 청파동1·2·3가, 갈월동, 효창 동, 남영동, 원효로1·2가, 한강로1·2가, 신계 동, 문배동, 용산동3·4·5·6가, 서빙고동
	이태원소방관 파출소	용산구 이태원 동 126-13	용산구중 : 이태원동, 한남동, 보광동, 동빙고동, 주성동
	후암소방관 파출소	용산구 후암동 244-54	용산구중 : 동작동, 후암동, 용산동1·2가
	이촌소방관 파출소	용산구 이촌동 212-3	용산구중 : 도원동, 용문동, 청암동, 산천동, 신광 동, 원효로3·4가, 한강로3가, 이촌동
동대문 소방서	장안소방관 파출소	동대문구 장안 동 434	동대문구중 : 장안동, 달실리동, 휘경동(휘경2 동), 전농동(전농1,3,4동)
	청량리소방관 파출소	동대문구 청량 리동 2-4	동대문구중 : 청량리동, 피기동, 휘경동(휘경1 동), 이문동, 제기동(제기1동), 용두동(용두1 동), 전농동(전농2동)
	중화소방관 파출소	중랑구 중화동 303-7	중랑구중 : 상봉동, 중화동, 목동
	면목소방관 파출소	중랑구 면목동 727	중랑구중 : 면목동
	망우소방관 파출소	중랑구 망우동 364-20	중랑구중 : 망우동, 신내동

서 별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영 동 포 소 방 서	영동포소방관 파출소	영동포구 영동 포동4가 100	영동포구중 : 영동포동(영동포1·2·3동), 도림동, 문래동(문래1·2동), 신길동(신길1·2·3·4·7동)
	당산소방관 파출소	영동포구 당산 동6가 339	영동포구중 : 당산동(당산1·2동), 양평동(양평1· 2동)
	여의도소방관 파출소	영동포구 여의 도동 48-2	영동포구중 : 여의도동
	대림소방관 파출소	영동포구 대림 동 906-133	영동포구중 : 대림동, 신길동(신길5·6동)
성북소방서	종암소방관 파출소	성북구 종암1 동 3-72	성북구중 : 종암동, 상월곡동, 하월곡동, 안암동, 돈암동(돈암1동)
	돈암소방관 파출소	성북구 삼선동 4가 349-1	성북구중 : 돈암동(돈암2동), 삼선동(삼선1·2동), 상북동, 보문동, 동선동(동선1·2동), 동소문동
	정릉소방관 파출소	성북구 길음동 1078-2	성북구중 : 정릉동, 길음동
	미아소방관 파출소	도봉구 미아8 동 327-2	도봉구중 : 미아동, 수유동(수유1동)
	장위소방관 파출소	성북구 장위동 34	성북구중 : 장위동, 석관동 도봉구중 : 번동(번2동)
	도봉소방서	방학소방관 파출소	도봉구 방학동 708-1
창동소방관 파출소		도봉구 방학동 653-4	도봉구중 : 도봉동, 쌍문동(쌍문2동) 도봉구중 : 방학동(방학2·3동), 방학동(방학1동 705-725, 729번지 제외)
상계소방관 파출소		노원구 상계2 동 180-3	노원구중 : 상계동, 중계동
우이소방관 파출소		도봉구 수유2 동 605-347	도봉구중 : 수유동(수유2·3·4·5동), 번동(번1 동), 쌍문동(쌍문1·3동)
공릉소방관 파출소		노원구 공릉1 동 656-4	노원구중 : 공릉동, 하계동
서부소방서		불광소방관 파출소	은평구 녹번동 48-5
	연희소방관 파출소	서대문구 연희 동 81-10	서대문구중 : 봉원동, 신촌동, 대신동, 대연동, 상 천동, 연희동
	북가좌소방관 파출소	서대문구 북가 좌동 333-9	서대문구중 : 북가좌동, 남가좌동 은평구중 : 신사동, 중산동, 수석동

서 별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서부소방서	갈현소방관 파출소	은평구 갈현동 3-4	은평구중 : 진관내동, 진관외동, 구파발동, 갈현 동, 불광동(불광2·3동)
마포소방서	신수소방관 파출소	마포구 신수동 100	마포구중 : 대흥동, 노고산동, 신수동, 구수동, 현 석동, 창전동, 상수동, 하중동, 신정동, 당인동
	도화소방관 파출소	마포구 도화동 180-6	마포구중 : 도화동, 마포동, 염리동, 용강동, 토정 동
	서교소방관 파출소	마포구 서교동 394-12	마포구중 : 동교동, 서교동, 연남동, 합정동, 망원 동(망원1동)
	성산소방관 파출소	마포구 성산동 448	마포구중 : 망원동(망원2동), 성산동, 중동, 삼암 동
	공덕소방관 파출소	마포구 공덕동 29-7	마포구중 : 공덕동, 신공덕동, 아현동
강남소방서	삼성소방관 파출소	강남구 삼성동 171-3	강남구중 : 삼성동, 대치동, 일원동, 개포동, 자곡 동, 수서동, 율현동, 세곡동
	영동소방관 파출소	강남구 논현동 92-1	강남구중 : 압구정동, 청담동, 신사동, 논현동(논 현동중 145-152, 154-156, 159, 896-899, 915 -932, 956-970, 972-975, 1007-1013번지), 학동(학동중 900-914, 933-936, 938, 940-945, 950-955, 977-985, 988-991, 993-1007번지)
	서초소방관 파출소	서초구 서초동 478-1	서초구중 : 우면동, 서초동(서초1동중 1680- 1699, 148-153, 산186, 193-3, 438, 452, 서초 2동중 14-16, 18, 42, 50, 52, 54, 61, 66, 73, 83-85, 88-91, 98, 130-132, 154, 156, 157, 163, 167, 산193, 300, 569, 861, 1302-1310, 1316-1318, 서초3동중 산165-7, 산165-8, 산 165-9, 산167-1, 산167-2, 산167-7, 산168-1, 산170-1, 산172-1, 산172-8, 산174-2, 산176- 2, 산176-4, 산176-22, 산177-185, 967-969, 1005-1번지 제외)
	역삼소방관 파출소	강남구 역삼동 771-2	강남구중 : 역삼동, 도곡동, 논현동(논현동중 95- 99, 101-112, 114-136, 138-144, 484-498, 1015, 1016, 1039-1056, 1058, 1059번지), 학동(학동중 499-519, 1017-1025, 1027-1029, 1031-1038, 1060-1087, 1089-1091번지)
	양재소방관 파출소	서초구 양재동 324-5	서초구중 : 양재동, 염곡동, 원지동, 신원동, 내곡 동
잠원소방관 파출소	서초구 반포동 45-3	서초구중 : 잠원동, 반포동(반포1·3·4동(4동중 65-612 제외); 서초동(서초1동중 1680-1699, 148-153, 산186, 193-3, 438, 452,	

서 별	명 칭	위 치	관 합 구 역
강남소방서	잠원소방관 파출소	서초구 반포동 45-3	서초2동중 14-16, 18, 42, 50, 52, 54, 61, 66, 73, 83-85, 88-91, 98, 130-132, 154, 156, 157, 163, 167, 산193, 300, 569, 861, 1302- 1310, 1316-1318, 서초3동중 산165-7, 산165-8, 산165-9, 산167 -1, 산167-2, 산167-7, 산168-1, 산170-1, 산 172-1, 산172-8, 산174-2, 산176-2, 산176-4, 산176-22, 산177-185, 967-969, 1005-1번지)
남부소방서	한포소방관	서초구 반포동 190-2	서초구중: 방배동(방배본·1동) 반포동(반포본·2·4동(4동중 65-612번지)) 동작구중: 동작동
	노량진소방관 파출소	동작구 노량진 1동 153-18	동작구중: 옥석동, 노량진동, 본동
	사당소방관 파출소	서초구 방배동 733-1	서초구중: 방배동(방배2·3동) 동작구중: 사당동(사당1동) 관악구중: 남현동
	신림소방관 파출소	관악구 신림동 1444-21	관악구중: 신림동(신림본·1·4·5·6동) 봉천동(봉천본·1동)
	봉천소방관 파출소	관악구 봉천동 38-1	관악구중: 봉천동(봉천2·4·5·6·7·8·9·10·11동), 신림동(신림2·9동)
	상도소방관 파출소	동작구 상도동 324-21	동작구중: 상도동(상도2·3·4동), 대방동, 신대방 동
	난곡소방관 파출소	관악구 신림동 757-11	관악구중: 신림동(신림3·7·8·10·11동)
	백운소방관 파출소	동작구 상도동 106	동작구중: 상도동(상도1동), 사당동(사당2·3·4 동) 관악구중: 봉천동(봉천3동)
강서소방서	등촌소방관 파출소	강서구 등촌동 630-2	강서구중: 염창동, 가양동, 등촌동, 다곡동, 방화 동, 개화동
	화곡소방관 파출소	강서구 화곡동 61-8	강서구중: 화곡동 양천구중: 신월동(신월1·3·5동)
	공향소방관 파출소	강서구 내발산 동 667-1	강서구중: 내발산동, 외발산동, 공향동, 과해동, 오곡동, 오쇠동
	신정소방관 파출소	양천구 신정동 1191-4	양천구중: 신정동(신정3·4·5동), 신월동(신월2· 4·6동)
	목동소방관 출장소	양천구 목5동 901	양천구중: 목동, 신정동(신정1·2·6동)
	강동소방서	성내소방관 파출소	강동구 성내동 541-39

서 별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강동소방서	잠실소방관 파출소	송파구 잠실동 44-5	송파구중: 잠실동(잠실3동), 석촌동, 송파동, 가 락동 강동구중: 삼전동
	천호소방관 파출소	강동구 성내동 302-13	송파구중: 풍납동 강동구중: 천호동(천호1·2·4동), 암사동, 성내동 (성내1동중 99-3, 108-1, 321, 320-13, 7, 9, 15, 319-33, 327, 328번지)
	거여소방관 파출소	송파구 마천동 307-11	송파구중: 거여동, 마천동, 문계동, 강지동
	고덕소방관 파출소	강동구 고덕동 494	강동구중: 상일동, 하일동, 고덕동, 명일동
	중합운동장 소방관파출소	송파구 잠실동 10	송파구중: 잠실동(잠실본·1·2·5동), 신천동(잠 실 4·6동)
	방이소방관 파출소	송파구 방이동 89	강동구중: 문촌동(문촌1동) 송파구중: 방이동, 오금동
구로소방서	직할소방관 파출소	구로구 고척동 63	구로구중: 고척동(고척1동), 신도림동, 개봉동 (개봉1·2·3동(개봉1동중 157-2, 157-6, 158, 159, 161, 170, 171, 173, 175, 178-182, 206- 208, 333, 353, 416, 417번지)) 구로동(구로1동(구로1동중 408-410, 415, 461, 463, 465-482, 486, 487, 491-498, 500, 584번지 제외))
	구로소방관 파출소	구로구 구로동 409-60	구로구중: 구로동(구로1동중 408-410, 415, 461, 463, 465-482, 486, 487, 491-498, 500, 584번지), 구로3동중 170-3부터 766-4, 1123- 1부터 1133-9까지 제외)
	공단소방관 출장소	구로구 구로동 188	구로구중: 개봉동, 구로동(구로3동중 170-3부터 766-4, 1123-1부터 1133-9)
	독산소방관 파출소	구로구 독산동 1030	구로구중: 독산동
	시흥소방관 파출소	구로구 시흥동 909	구로구중: 시흥동
	고척소방관 파출소	구로구 고척동 165-5	구로구중: 고척동(고척2동) 개봉동(개봉1동(개봉1동중 157-2, 157-6, 158, 159, 161, 170, 171, 173, 175, 178-182, 205-208, 333, 353, 416, 417번지 제외))
	오류소방관 파출소	구로구 궁남 213-20	구로구중: 궁남, 오류동, 은수동, 천왕동, 광동

②시장은 변상금을 부과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변상금부과·징수처리의 대장을 작성·비치한다.

제6조(대부료 등의 연체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대부료 또는 변상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연도·세목·납입기간·납입금액·연체요금 및 연체금액 등을 기재한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독촉기간이 경과한 미납자에 대하여는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제3의하여 대부료 또는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7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조, 제3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 기타 체비지의 대부, 관리 및 변상금징수에 관한 권한을 체비지 소재지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8조(보고) 체비지 소재지 구청장은 대부료 및 변상금 징수실적을 매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안 내 문

제목: 점유체비지 대부계약 체결

수신: 구 동 번지

귀하

귀하께서 지금 점유 사용하고 계신 동 번지(면적:)는 지구 토지구획경리사업지구 체비지이므로 조속히 매수하시기 바라며, 부득이 매수가 어려우시면 까지 우리 구도 시장폐쇄에 오시어 대부계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체비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서울특별시체비지대부료등부과·징수조례 제3조에 의하여 대부금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지참서류: 인감증명서 1통(용도: 체비지대부 신청용)

인감도장

1991.

○○구청장

(별지 제2호서식)

안 내 문

제목: 점유물(건물, 자재 기타) 철거 및 변상금 부과안내

수신: 구 동 번지 귀하

1. 귀하께서 현재 점유 사용하고 계신 구 동 번지(면적: m)는 지구 토지구획경리사업지구 체비지이므로 까지 자진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께서 체비지를 무단점유,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서울특별시체비지대부료등부과·징수조례 제3조에 의하여 변상금이 부과되며, 위 기간내에 자진철거를 하시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라 변상금이 추가로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구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1.

○○구청장

(별지 제3호서식)

체비지대부신청서

○ 계산의 표시

• 소재지:

• 지 목:

• 면 적:

○ 대부기간:

○ 대부목적:

○ 대 부 료: 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한.

○ 대부조건 : 귀사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19

신청인 주소

성명

㉔

첨 부 : 인감증명서 1통

○ ○ 구 청 장 귀 하

<별지 제4호서식>

채비저대부계약서

○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구청장을
“갑”이라 하고, 대부받은 자를 “을”이라 하
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

제2조 대부기간

년 월 일부터 (일간)
년 월 일까지

제3조 대부료 연액 원정, 다만, 월
할계산에 있어 1월미만 일수는 일할 계
산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부료를 납부한다.

제5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
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을은 제4조
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6조 을은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7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에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
부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을이 채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4. 갑으로부터 대수요구를 받고 대수에
용하지 아니한 때

5. ①기타 을이 본 계약 조항을 불이행하
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제1항 내지
제4항 규정에 의하여 해약하는 경우에
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으
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약하는 경
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
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8조 ①본 계약 기간중에 을이 해약을 요
구할 때에는 1월 전에 해약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해약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
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약으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
을지라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9조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대부기간 만료 후 을이 계속하여 대
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1월
전에 다시 대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그 배상의 책
임을 진다.

제12조 을은 본 계약의 조항에 관하여 이
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하
고 각각 1통씩 가진다.

19

임대자(갑)

○ ○ 구 청 장 ㉔

임차인(을)

㉔

<별지 제5호서식> 납입고지서 및 납입통지서		원 부		영 수 증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시수입) 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시수입) 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시수입) 구																																																							
지구명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명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명	토지구획정리사업																																																						
과목명	집수입(대부료) 19년도 허가번호	과목명	집수입(대부료) 19년도 허가번호	과목명	집수입(대부료) 19년도 허가번호																																																						
물건지	구 동 번지 호	물건지	구 동 번지 호	물건지	구 동 번지 호																																																						
주소		주소		주소																																																							
성명		성명		성명																																																							
납입금액	<table border="1" style="width:100%; text-align: center;"> <tr> <td>억</td><td>천</td><td>백</td><td>십</td><td>만</td><td>천</td><td>백</td><td>십</td><td>원</td> </tr> <tr> <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 </tr> </table>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납입금액	<table border="1" style="width:100%; text-align: center;"> <tr> <td>억</td><td>천</td><td>백</td><td>십</td><td>만</td><td>천</td><td>백</td><td>십</td><td>원</td> </tr> <tr> <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 </tr> </table>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납입금액	<table border="1" style="width:100%; text-align: center;"> <tr> <td>억</td><td>천</td><td>백</td><td>십</td><td>만</td><td>천</td><td>백</td><td>십</td><td>원</td> </tr> <tr> <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 </tr> </table>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위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간: 19 년 월 일 납부장소: 시 공과금수납은행		19 년 월 일 은행지점		19 년 월 일 은행지점																																																							
수납일부인	구 청 장	수납일부인		수납일부인	취급자인																																																						
(구 청 통 보 용) 1. 납기가 경과하면 납입고지서를 재발부 받아야 합니다. 2.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수납은행 보관용)		(개인소사용) ※수납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별지 제6호서식)

납입고지서 및 납입통지서

원 부

영 수 증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시수입) 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시수입) 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시수입) 구

지구명	토지구획정리사업
과목명	잡수입(변상금) 19년도 허가번호
물건지	구 동 번지 호
주소	
성명	

지구명	토지구획정리사업
과목명	잡수입(변상금) 19년도 허가번호
물건지	구 동 번지 호
주소	
성명	

지구명	토지구획정리사업
과목명	잡수입(변상금) 19년도 허가번호
물건지	구 동 번지 호
주소	
성명	

납입금액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	---	---	---	---	---	---	---	---	---

납입금액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	---	---	---	---	---	---	---	---	---

납입금액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	---	---	---	---	---	---	---	---	---

위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간: 19 년 월 일
납부장소: 시 공과금수납은행

19 년 월 일

19 년 월 일

19 년 월 일
구청장
수납일부인

은행지점
수납일부인

은행지점
수납일부인
취급자인

(구청 통보용)

(수납은행 보관용)

(개인 소지용)

1. 납기가 경과하면 납입고지서를 재발부 받아야 합니다.
2.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수납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55-28

(별지 제7호서식)								
채비지 대부 정리부								
소재지		시 구 동(가) 번지 호						
출진표지	코드번호							
	지 목							
	면 적	전체 피중 대부 피						
적 요								
계약 번호	사용 목적	계약(갱신) 연 월 일	기 간	대부사	대부사용료정수		사 용 자	
				상료액	금액	정수연월일	주 소	성명
		년 월 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

체비지대부계약처리대장

확 인		계약	계약	계약	소재지	번지	지목	대부 (면적㎡)	대부 목적	대 부 료			수계약자		계약서	교부	코드	비고
극장	과장	계장	담당자	번호						연월일	기간	조정액	징수금액	징수연월일	주소	성명	수령인	

제 1572 호

시

본

1991. 6. 25

3556

제 1572 호
시
보
1991. 6. 25

채비지대부토정수부									
고지번호	대부물건	대부면적 (㎡)	대부기간	고지서발부일자	조정액 (소인)	영수월일 (소인)	남 부 의 무 자		비 고
				남 부 기 한			주 소	성 명	

55-31

(별지 제10호서식)

변상금부과정수처리대장

(년도)

고지번호	경용물건	점용면적 (㎡)	점용기간 (일)	점유형태 (유형)	고지서발부일자		영수월일 (소인)	남 부 외 부 자		비 고
					남 부 기 한	조정액 (고지액)		주 소	성 명	

(별지 제11호서식) 독촉장 및 납입통지서		원 부		영 수 증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시수입) 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시수입) 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시수입) 구	
지구명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명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명	토지구획정리사업
과목명	접수입(대부료 변상금) 19년도 허가번호	과목명	접수입(대부료 변상금) 19년도 허가번호	과목명	접수입(대부료 변상금) 19년도 허가번호
물건지	구 동 번지 호	물건지	구 동 번지 호	물건지	구 동 번지 호
주소		주소		주소	
성명		성명		성명	
납입금액	대부료	원	원	대부료	원
	변상금	원	원	변상금	원
	연체요율	%	원	연체요율	%
	계	원	원	계	원
위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간: 19 년 월 일 납부장소: 시 공과금수납은행 19 년 월 일		19 년 월 일 은행지점		19 년 월 일 은행지점	
수납일부인	구 청 장	수납일부인		수납일부인	취급자인
(구청봉보용)		(수납은행보관용)		(개인소지용) ※수납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별지 제12호서식>

제리지 대부표 및 변상금 징수실적 월보(월분)

<월년도분>

구분	조 정			징 수			채 납		
	건 수	면 적	금 액	건 수	면 적	금 액	건 수	면 적	금 액
총 누 계									
대부표	누 계								
	당 월								
변상금	누 계								
	당 월								

<과년도분>

구분	이 월 채 납		당 월 징 수		징 수 누 계		잔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누 계								
대 부 표								
변 상 금								

훈 령

서울특별시재해대책본부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 한다.

1991. 6. 25

서울특별시장 이해원

●서울특별시훈령제716호

서울특별시재해대책본부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풍수해대책법시행령(이하"령"이라한다)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재해대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대책업무를 원활하고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직 및 임무

제2조(통제관 등) ①영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한 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및 본부의 차장(이하 "차장"이라 한다)을 보좌하는 통제관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통제관 밑에 보좌관, 담당관, 분담관 및 실무반을 둔다.

②통제관은 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하며 본부장의 명을 받아 실무반을 지휘·감독한다.

③보좌관은 하수국장(설해대책시는 도로국장) 및 민방위국장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 및 통제관을 보좌하며 지시에 따라 실무반을 지휘·감독한다.

④담당관은 하수국 치수과장(설해대책시 도로국 도시실과장)과 민방위국 민방위과장이 되며 본부운영의 실무책임자로서 통제관 및 보좌관을 보좌한다.

⑤분담관은 재해대책업무 담당 과의 계장으로서 관리분담관은 행정사항, 방재 분담관은 기술사항에 관하여 각각 담당관을 보좌한다.

⑥영 제19조 규정에 의한 실무반의 반장은 소속 반원을 지휘하며 통제관을 보좌한다.

제3조(직무대행) ①영 제20조제3항에서 규정한 본부장의 직무대행은 차장인 부서장으로 한다.

②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통제관, 보좌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권限사항) ①본부장이 본부의 지반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그의 권한을 별표 1과 같이 위임전결하도록 한다.

②위임전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재권자가 본부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위임전결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위임전결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재해대비 체계

제5조(대비체계 구분등) ①재해예방 또는 재해경감을 위하여 신속하고 강력한 대비체제를 갖추되(별표 2) 이를 준비단계(제1단계), 경계단계(제2단계) 및 비상단계(제3단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계의 개시와 해제는 본부장이 이를 지시하며 대비단계에 따른 실무반 편성운영은 재해상황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각 체계하의 근무시간은 당일 09:00부터 익일 09:00까지로 한다. 다만,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준비단계) ①준비단계(제1단계)라 함은 폭풍, 폭풍우, 호우, 폭풍설, 대설 및 태풍 등에 관한 주의보(이하 "재해에 관한 주의보"라 한다)가 발령되어 재해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본부장이 이에 준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를 말한다.

②준비단계하의 대비태세는 다음과 같다.

1. 제20조 규정에 의한 당직근무자의 등원

<p>2. 강우량 등 기상관계 자료 수집분석</p> <p>3. 구제해대책본부 및 사업소에 재해예방 조치 지시</p> <p>4. 피해발생 상황 및 응급조치 상황 파악 집계보고</p> <p>5. 경제체제로의 전환준비</p> <p>제7조(경제체제) ①경제체제(제2단계)라 함은 홍수주의보, 폭풍, 폭풍우, 호우, 폭풍설, 대설 및 태풍 등에 관한 정보가 발령되어 재해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본부장이 이에 준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를 말한다.</p> <p>②경제체제하의 대비태세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 2. 본부상황실 상황판 정리 및 사무용품 원비 3. 관계기관과의 통신시설 정비 또는 신규 설치 4. 본부운영에 필요한 직원파견 요청 5. 실무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적일제 근무 실시 6. 비상체제로의 전환준비 <p>제8조(비상체제) ①비상체제(제3단계)라 함은 홍수경보 발령 및 한강수계 대부분 의 지역 또는 지역적으로 막심한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막심한 재해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및 본부장이 이에 준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를 말한다.</p> <p>②비상체제하의 대비태세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 2. 본부 회의소집 검토 3. 재해 격심지역 특별통신망 구성 검토 4. 비상조치 계획 수립 및 실시 5. 재해발생상황 또는 응급조치상황 등 재해관계 자료작성 및 대외홍보 <p>제4장 실무반 편성 운영</p> <p>제9조(공통사항) ①장문서상의 공람 또는 결재에 있어서 실무반의 순위는 제10조 내지 제17조에서 규정한 반의 순으로 하며 각 반의 관장사무는 본부장이 필요하</p>	<p>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p> <p>②각 반장은 관련업무를 담당할 반장과 자료제공 등 상호 긴밀한 업무 협조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p> <p>③각반은 4급공무원인 반장 2인과 5급 이하 공무원 4인 이상으로 편성한다.</p> <p>제10조(행정 및 통신지원반) ①행정 및 통신지원 반장과 그 반원은 기획관리실, 감사관실 및 내무국 및 하수국 하수행정과(설해대책시는 도로국 건설행정과)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p> <p>②행정 및 통신지원반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부조직 및 운영관리 2. 실무반원 복무 및 후생 3. 본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본부운영 집행 등 예산편성 및 회계, 물품운영에 관한 사항 5. 상황실 및 차량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구제해대책본부 및 사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7. 수해예방 및 복구에 관한 제반예산 조치 8. 상부기관 보고 요청시 보고에 관한 사항 9. 문서 접수 및 발송에 관한 사항 10. 본부 및 관제기관에 설치된 통신망의 장비점검 및 운영 11. 통신망 구성 및 유지에 관한 사항 12. 통신시설의 응급복구 지시 및 복구 필요요청 13. 본부내의 일반사무와 타 실무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p>제11조(복구반) ①복구반장 및 반원은 도로국, 하수국, 산업경제국, 환경녹지국, 주택국, 상수도사업본부, 지하철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p> <p>②복구반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응급복구용 장비동원 및 중상명령에
---	---

<p>관한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응급조치의 지시 및 보고자료 수합정리 3. 피해복구 계획 수립 4. 피해상황 현지조사 5. 복구 소요예산 편성자료 작성 6. 복구사업 지도감독 7. 피해발생 상황의 파악집계 8. 복구용 수방자재 수급 및 배정에 관한 사항 9. 급수 자원 조치사항 10.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 <p>제12조(정보 및 수난구조반) ①정보 및 수난구조반장 및 반원은 민방위국, 소방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p> <p>②정보 및 수난구조반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해정보의 수집 및 분석보고 2. 재해 위험지의 주민에 대한 대피지시 또는 권고 3. 수난구조 활동에 관한 사항(헬기지원 등) 4. 군 병력, 군 장비 지원파악 및 협조에 관한 사항 5. 민방위대 동원에 관한 사항 6. 방재 신호사용 지도감독 7.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 <p>제13조(총괄 및 기상반) ①총괄 및 기상반장과 반원은 하수국(도보국), 민방위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p> <p>②총괄 및 기상반원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해 통계작성 및 보고 2. 상황판 관리 및 정리에 관한 사항 3. 강우량, 강실량 등의 파악 및 정리 4. 관계기관간의 재해대피에 관한 협의사항 추진 5. 각종 기상 예·경보 통보 및 해제에 관한 사항 6. 재해재 편찬 주의보 또는 경보에 관한 자료의 수집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7. 시간별 기상 및 수위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8. 한강수계의 홍수통제에 관한 사항(명수문 조작상황 및 수위전망에 관한 자료 수집) 9.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 <p>제14조(구호반) ①구호반장 및 반원은 보건사회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p> <p>②구호반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호물자 비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이재민 수용 및 구호시설의 파악과 조정통제 3. 소득 및 방역사항에 관한 파악과 조정통제 4. 의연금품 접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 <p>제15조(수송반) ①수송반장 및 반원은 교통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p> <p>②수송반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복구장비 수송에 관한 사항 2. 시민수송 및 물자수송(수방자재, 구호물자)에 관한 사항 3. 교통통제(우회도로 협의) 및 협의지시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 <p>제16조(보도반) ①보도반장 및 보도반원은 공보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p> <p>②보도반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의 홍보 2. 재해에 관한 주의보, 경보 등 중요 기상자료의 보도 3. 피해발생 상황의 응급조치 사항의 보도 4. 피해복구 계획 등 주요대책 관계자료의 보도 5.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 <p>제17조(실무반(복무)) ①본부에 파견된 실무반원은 행정 및 통신지원반에 신고하여 그가 근무할 한 및 조를 지정받는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쳐야 한다.</p>
--	---

②실무반원은 본부장이 정하는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상급자의 지시를 이행하는동 각자 맡은바 직무에 충실하여야 한다.

③본부장은 본부에 파견된 실무반원의 복무상태가 극히 불량한 자에 대하여는 용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실무반원의 복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또는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다.

제5장 당직근무

제18조(당직설정) ①원활하고 각속적인 재해대책 업무수행을 위하여 본부의 당직근무제를 재해대책본부 운영기간 동안 실시한다. 단, 재해대책본부 운영 주관부서 요원은 서울특별시당직근무규칙 제3조에 의한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한다.

②당직자는 본부상황실에서 근무한다.

제19조(당직의 구분) ①당직은 일직과 속직으로 구분하고 그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일직: 당일 09:00부터 당일 18:00까지로 한다.

2. 속직: 당일 18:00부터 익일 09:00까지로 한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속직근무자는 익일 13:00에 휴무 귀가한다.

제20조(당직명령) ①본부장은 하수국(설해대책시는 도로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일직 및 속직근무자를 각각 2명씩 윤번제로 명령한다. 단, 준비체제시 등 본부장이 증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추가로 명령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별지) 서식에 의한 당직교체(대직) 승인원환 본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승인을 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다른 자로 하여금 대리근무토록 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

아야 한다.

제21조(당직업무)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강우(철)량 등 재해관련 기상자료 수집 파악
2. 피해발생 유무확인 및 피해발생 파악
3. 재해대책에 관련된 상급자의 지시사항 처리

②제1항제1호~3호의 사항 중 긴급한 사항이나 중요한 정보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지시사항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③당직근무자는 근무원료와 동시 당직근무일지 등을 기록 정리하고 근무 중 제반사항을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2조(당직자 등 급식) ①당직근무자 중 일직근무자에 대하여는 1식을 지급하고 속직근무자에 대하여는 2식을 지급한다. 단, 대비체제 근무로 24시간 교대근무자는 3식을 지급한다.

②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반원에 대하여는 2식을 지급한다. 단, 특별근무자 및 휴일근무자에 대하여는 1식을 지급한다.

③급식 1식의 단가는 당해연도 예산사상의 급량비 단가로 한다.

제23조(피해상황 보고)

풍수해대책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구재해대책본부장은 그 관할구역 안의 피해 발생상황을 다음 요령에 의하여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구재해대책본부장은 관할구역 내에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거나 도로부절, 산사태, 제방붕괴 등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상황 및 중요 특기사항의 내용을 중앙재해대책본부장에 직결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보고

가. 보고시기: 강우 및 기타 재해원인

<p>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피해발생 파악 즉시</p> <p>나. 보고내용: 피해상황 보고서(풍수해대책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p> <p>다. 보고 방법: 전화 또는 팩시밀리 보고</p> <p>2. 일일보고</p> <p>가. 보고시기: 강우 또는 강설 등 재해 원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당일 08:00를 기준 09:00까지, 11:00를 기준 12:00까지, 14:00를 기준 15:00까지, 20:00를 기준 21:00까지(1일 4회)</p> <p>나. 보고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풍수해 총괄표(풍수해대책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2) 피해 내용(인적 피해 포함) 3) 주요 지역별 강우(설)량 4) 응급복구 조치사항 총괄(풍수해대책법시행규칙 별지 3호서식) 5) 응급구호 조치사항 총괄(풍수해대책법시행규칙 별지 4호서식) 6) 군 지원상황 7) 교통두절 현황 8) 중요 조치사항 및 2차적 피해상황 <p>다. 보고 방법: 전산보고, 전화 또는 팩시밀리 보고</p>	<p>3. 최종보고</p> <p>가. 보고 시기: 강우 또는 강설 등 재해원인이 종료된 후 2일 이내</p> <p>나. 보고 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호 "나" 목 1)~6) 2) 인명피해 사항 3) 응급복구 조치사항 총괄(풍수해대책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4) 응급구호 조치사항 총괄(풍수해대책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5) 수난구조사항 6) 인원 및 장비 동원사항 <p>다. 보고 방법: 전산기, 전화, 팩시밀리 또는 서면 보고</p> <p>4. 확정보고(피해합동조사반 보고)</p> <p>가. 보고 시기: 최종보고 후 5일 이내</p> <p>나. 보고 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호 "나" 목 1)~6) 2) 주요 피해현황 사진첨(사진규격: 칼라 5"×7") 3) 재해대장(풍수해대책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p>다. 보고방법: 서면보고 부 칙</p> <p>①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위 입 권 결 사 항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진 결 권 자 비				
		본 부 장	차 장	통 계 관	보 좌 관	반 장
1	본부조직및운영 • 4급 이상 공무원 파견 또는 차출 • 5급 이하 공무원 파견 또는 차출 • 각 체계의 개시 및 해제 결정 • 실무반 편성 및 운영 • 실무반원 복무 지도감독 • 본부 당직명령 및 당직근무상태 지도점검 • 계해일지 기록 배치 • 본부물품 관리운영	○		○	○	○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본 건 결 관 자 비			
		부 장	차 장	보 좌 관	보 좌 관
2	본부 회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부회의 위원 위촉 및 해촉 • 회의안건 작성 등 운영 • 회의소집 방침결정 • 회의소집 일시 및 장소등의 변경 		○	○	○
3	방재교육 또는 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지도감독			○	
4	각 구재해대책본부 및 사업소재해대책본부 지휘감독			○	
5	재해대책 관계기관에 대한 협의 및 지시 등				○
6	기상특보 발령에 대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수 등 정보 발령시 • 홍수주의보 발령시 • 기상주의보 발령시 			○	○
7	방재용 자재의 수송 지휘에 관한 사항				○
8	수난구조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헬기 등 주요장비 지원요청 및 협의 • 수난구조 상황 파악 			○	○
9	군 지원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장비 등 지원요청 및 협의 • 군장비 지원사항 파악 			○	
10	구호활동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호활동 지원요청 및 협의 • 구호활동 상황파악 			○	○
11	통신망운영에 관 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기관간 통신시설 설치 • 통신시설 수리 및 보수 				○
12	피해 종합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자료 수집 • 피해상황 자료수집 • 일일 재해상황 보고서 작성 및 배부 • 합동 조사반 현지파견 결정 • 피해액 확정 • 복구계획 수립 • 복구사업 지도감독 		○	○	○
13	본부 행정비 예산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부행정비 대시 및 배정요구 • 본부 급량비 지출요구 			○	○
14	지시 및 기존 방침이나 결정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조치되는 사항				○
15	조각 회의록집 및 조사 또는 자료의 수집이나 보고서의 처리에 관 한 사항				○

(별표 2) 재해대비 체제별 근무요령			
구분 체제별	조	건	판
체제별	조	건	판
준비체제 (제1단계)	1. 호우 또는 태풍주의보 발령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당 강우량이 20m/m 이상 • 일강우량 80m/m 이상 • 한강인도교 수위 4.5m 도달 • 폭풍, 집중호우로 재해 발생 예상시 2. 대설주의보 발령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온 -5℃ 이하로 적설 5cm 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지휘: 재해대책 담당과장 • 재해대책본부 요원 1/4로 15명 이상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위치: 비재해기간은 스톱과에서, 재해기간(6.15~10.15) 중은 상왕실, 11.10~3.10우지 • 기상예보 접수 및 전달 • 수방대비 지시 • 제2단계 조치사항 준비
경계체제 (제2단계)	1. 호우 또는 태풍경보 발령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강우량 150m/m 이상 2. 홍수주의보 발령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강인도교 수위 8.5m 도달 3. 대설경보 발령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온 -5℃ 이하로 적설 10cm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지휘: 하수국장(도로국장), 민방위국장 • 보좌: 민방위국 과장, 재해대책 담당과장 • 재해대책본부 요원 1/2로 30명 이상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상황 정리 • 상황 처리 • 24시간 교대근무 • 제3단계 준비
비상체제 (제3단계)	1. 홍수경보 발령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강인도교 수위 10.5m 2. 지역적으로 막심한 피해 발생 예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자: 부시장 • 재해대책본부 요원 24시간 비상근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발생시 지원활동 • 장비, 인력동원 • 복구계획 작성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190호
 1991년도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고시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1991년도 서울
 특별시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율 지방자치법 제124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예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1. 6. 25

서울특별시장 이해원

연 번	회 계 별	예 산 액
1	○ 입 반 회 계	2,764,803,747천원
2	○ 특 별 회 계	3,230,033,000천원
	- 수도사업특별회계	506,830,000천원
	- 하수처리장비특별회계	131,506,000천원
	- 국민주택비특별회계	148,300,000천원
	- 도시개발사업비특별회계	1,118,438,000천원
	- 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	205,039,000천원
	- 주택개발비특별회계	51,782,000천원
	- 지하철운수사업비특별회계	860,800,000천원
	- 주차시설비특별회계	55,747,000천원
	- 유료도로비특별회계	21,203,000천원
	-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2,684,000천원
	- 병원사업특별회계	6,714,000천원
	- 종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	33,495,000천원
	- 특정건축물정리비특별회계	2,928,000천원
	- 주거환경개선사업비특별회계	48,269,000천원
	- 교통방송사업비특별회계	6,398,000천원

●서울특별시고시제 195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

1. 우리 시 판내 한신대학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하였기 같은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도봉구청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1. 6. .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 도봉구 수유동 산 129-1 일

나.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사업(학교)

다. 사업의 명칭: 한신대학 시설 증축

라. 사업 시행 규모

1) 시행면적: 43,655㎡

2) 사업내역

가) 기존동수: 16동,

연면적: 5,672.73㎡

나) 금회 허가

○ 신학대학원 신축(지하 1, 지상 3층)

- 용도: 기숙사, 교표 및 신학연구소

- 연면적: 2,486.88㎡

○ 기존교사 사택 3동 철거

- 연면적: 238.02㎡

다) 누계동수: 14동,

연면적: 7,921.59㎡

마. 사업시행자 주소: 도봉구 수유동 산 129-1

성명: 학교법인 한신학원 이사장 김봉학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1) 착수연월일: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

2) 준공예정일: 1992. 6. 30

사. 위치 및 평면계획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및 도봉구청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 비치도면과 같음.

아. 토지소유자: 학교법인 한신학원(수용할 토지 없음)

●서울특별시고시제196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및변경허가

1.우리 시 관내 덕성여자대학교, 이화여자 대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구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허가 및 변경 허가하고,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 계획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1. 6. 24

서울 특별시장

○ 덕성여자대학교

가. 사업시행지 : 도봉구 쌍문동 419 일대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학교)

다. 사업의 명칭 : 덕성여자대학교 시설 증축

라. 사업 시행 규모

1) 사업시행면적 : 193,466㎡

2) 사업내역

가) 기존동수 : 9동

연면적 : 48,886㎡

나) 급회 허가내역

• 육아교육관 신축(지하 1, 지상 3층)

-연면적 : 2,122.06㎡

• 목공실 신축(지상 1층)

-연면적 : 213.96㎡

• 체육실 철거(지하 1, 지상 1층)

-연면적 : 204.83㎡

• 창고 철거(지상 1층)

-연면적 : 150㎡

다) 합계 - 동수 : 9동,

연면적 : 50,867.40㎡

마. 사업시행자 주소 : 종로구 단국동 37

성명 : 학교법인 덕성학원 이사장 박원국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1) 착수연월일 :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

2) 준공예정일 : 1992. 6. 30

사. 위치도 및 허가도면 : 도시계획국 시

설계획과 및 도봉구청 도시정비과 비치도면과 같음.

아. 토지소유자 : 학교법인 덕성학원(수용할 토지 없음)

○ 이화여자대학교

가. 사업시행지 : 서대문구 대현동 11-1 일대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학교)

다. 사업의 명칭 : 이화여자대학교 시설 증축

라. 사업 시행 규모

1) 사업시행면적 : 529,000㎡

2) 사업내역

가) 기존-동수 : 45동,

연면적 : 198,282.29㎡

나) 급회 허가내역

• 인문관 신축 공사 변경

- 당초 11,321.15㎡ → 변경 11,

985.4㎡, 증 664.25㎡

• 골프연습장 설치

- 조성면적 : 1,680㎡

다) 합계 - 동수 : 45동,

-연면적 198,946.54㎡

바. 사업시행자 주소 : 서대문구 대현동 11-1

성명 : 학교법인 이화학당 이사장 정의숙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1) 착수연월일 :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

2) 준공예정일 : 1992. 12. 31

사. 위치도 및 허가도면 : 도시계획국 시설

계획과 및 서대문구청 도시정비과 비치도면과 같음.

아. 토지 소유자 : 학교법인 이화학당(수용할 토지 없음)



●서울특별시공고제179호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개정(안)입법예고

서울특별시건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

용과 취지를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991. 6. 25

서울특별시장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 취지 : 건축조례 시행상 불합리한 건축기준의 조정
3. 주요 내용 : 별첨
4. 의견 제출 :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1.7.21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지를 세워서 작성)를 서울특별시장(참조: 건축지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건축조례개정(안) 주요내용

1.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풍치지구 건축기준을 강화함(안 제3조의2, 제4조).
 - 국립공원 경계로부터 1,000m 이내에는 공동주택 불허(기타지역 허용)
 - 지표하에 설치하는 지하건축물은 대지면적의 60% 이내로 제한
 - 전용주거지역에 위치한 풍치지구는 건폐율을 30%에서 20%로 강화
2. 자동차급중에 따른 미관지구 안에 자동차운전계학원을 허용함(안 제12조제6항).
 - 제3종 내지 제5종 미관지구: 자동차운전계학원 허용
3. 대지 안의 조정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함(안 제32조제1항).
 - 교목의 크기 : 수고 2m에서 3m로 완화
 - 교목 실제 밀도 ㎡당 : 0.3본에서 0.2본으로 완화
 - 판목 식재 밀도 ㎡당 : 0.5본에서 1본

으로 강화

- 교목에 대한 상목비율 : 40%에서 30%로 완화
4.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의 은둔시공대상 에 은수은탈도 포함함(안 제48조의2).
 - 바닥면적 60㎡ 이상의 구들은플에서 구들은플 및 은수은탈로 조정
 5. 도시계획구역내 건축기준 완화내용을 형성성 있게 세분화함(안 제49조제2항).
 - 건축선 후퇴시의 건폐율 완화 : 당해 지역·지구 건폐율의 1.2배 이하에서 (1+건축선 후퇴면적/대지면적)배 이하로 서 최고 1.2배 이하로 조정.
 - 공공공지 제공시 용적률 완화 : 당해 지역·지구 용적률의 1.2배 이하에서 (1+공공공지 제공면적/대지면적)배 이하로 서 최고 1.2배 이하로 조정
 6. 아파트형 공장의 규모를 건설부조례준칙 범위로 조정함(안 제49조의3).
 - 일반 주거지역의 규모 : 5,000㎡에서 3,000㎡로 조정
 - 1천세대 이상의 영구임대주택단지에는 지역내 정한 규모의 1.5배까지 허용 신설

예 규

서울특별시체비지관리및처분규정중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명한다.

1991. 6. 25

서울특별시장 이태원 ㉞

●서울특별시예규제533호

서울특별시체비지관리및

처분규정중개정규정

서울특별시체비지관리및처분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부 령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이미 계약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구 고 시

●**동작구고시제11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나) 사업규모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5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91. 6. 25

동 작 구 청 장

1. 사업명 : 민영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 종로구 소송동 146-12 내림산업(주)
3. 사업시행지 및 규모
 가) 위치 : 서울특별시 · 동작구 대방동 362-1의 4필지

주택종별	규 모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축연면적 (㎡)	사 업 비 (천 원)
	층	동	세대				
아 파 트	19	14	1,628	73,186.132	13,409.31	237,896	273,186,960

4. 사업기간 : 91.7.~93.6.
 5. 설계도면 : 생략
 ●**동작구고시제12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5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나) 사업규모

1991. 6. 25

동 작 구 청 장

1. 사업명 : 민영주택건설사업
- 사업주체 : 동작구 상도동 279-115 상도동 동아지역주택조합 대표 유기훈
3. 사업시행지 및 규모
 가) 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산 65-117

주택종별	규 모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축연면적 (㎡)	사 업 비 (억 원)
	층	동	세대				
아 파 트	15	1	75	2,177	764.57	8,772.94	74

4. 사업기간 : 91.7.~92.12
 5. 설계도서 : 생략
 ●**중구고시제12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 중구공포 제17호(90.4.2)로 도시계획사업(도로) 시행인가를 위한 공람 및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8호(90.4.23)로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26조, 제27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중구청 토목과, 건설관리과에 비치한 토지 및 건물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1. 6.

중 구 청 장

<p>가. 사업시행 위치 : 남학동 25의 1~13의 2번지간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도로) 남학동 23-12 주변 소방도로 개설공사 다. 사업규모 : ○ 당초 : 폭 6m, 연장 150m ○ 변경 : 폭 4m, 연장 150m</p>	<p>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마. 사업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2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 세목조서 : 별첨 아.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별첨</p>
--	---

토 지 조 서

당 초				변 경			
소재지지번	지목	면적(㎡)	주 소 성 명	소재지지번	지목	면적(㎡)	주 소 성 명
남학동 22-22	대	0.3	강동구 천호동 412-5 이 회 순	남학동 22-22	대	0.3	강동구 천호동 412-5 어회순 (魚喜順)

물 건 조 서(추가)

소재지지번	종류	구조및 규 격	면 적 (㎡)	용도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권리 종류및내용
남학동 13-2	건 물	연 와 조	0.7	호 텔 부 속 건 물	동곡상사(주)	남학동 13-2			
필동1가 20-05	"	연 와 조 스 래 트	4.4(점포) 3.2(계단) 1.9(1층) 1.9(2층)	창 고 점 포	오세민	서초구 서초동 1518-6삼익서초연립 2-101	중소기업은행	중구 을지로 2가 36의 1	근 저 당
"	지장물	6×3m	1식	담장	"	"			
필동1가 21-13	건 물	철 근 콘 크 리 트 스 라 브	3(1층) 3(2층)	사무실	서분례	필동1가 21-13	서민신탁은행	중구 남대문로 2가 10-1	근 저 당
남학동 22-26	"	목 조 기 와	8	주 택	이회수	강남구 대치동 992한양(아) 101-1502	양주속산업협동조합	외정부의정부 200-13도봉지소	근 저 당
"	지장물	7×2m	1식	담장	"	"			
남학동 22-21	영업권	1식	잡 화 점	강현수	남학동 22-1				
남학동 17-1	"		1식	숙박업	유정자	성북구 정릉동 710-2			

<p>●용산구고시제13호 주택건설사업(재건축)계획승인 1. 용산구 이촌2동 201-1호 외 6필지상 건설사업(재건축)계획승인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용산구청 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1.6.17 용 산 구 청 장 - 고 시 내 용 - 가) 사업명:재건축 아파트건설사업 나) 사업주체:시영아파트 재건축 주택조합조합장 박승의 다) 위 치:용산구 이촌동 201-1 외 6필지 라) 대지면적:12,429.7㎡ 마) 규 모:아파트 4동, 지하2층 지상15층 435세대 바) 건축면적:50,831.3㎡</p>		<p>사) 시행기간:91.6.~93.6. 2. 도면:별첨과 같음(생략) 3. 기타:관계도서는 용산구청 주택과 비치 보관 ●마포구고시제13호 토지세목추기고시 1. 마포구고시 제8호(91.4.29)로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 계획인가 고시된 망원동 236의4~458의72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 토지세목조서를 다음과 같이 추가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마포구청 도목과와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1.6.25 마 포 구 청 장 ○ 사업명:망원동 236의 4~458의 72간 도로개설공사</p>	
토 지 조 서			
지 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마포구 망원동 213-19	전	1	마포구 망원동 457-32 주 소 성 명 전순천
<p>●도봉구고시제16호 도시계획사업(도로)변경시행허가 1. 도봉구고시 제348호(88.12.14)로 시행허가된 도봉구 쌍문동 416번지상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시행허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도봉구 도시경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1.6.21 도 봉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도봉구 쌍문동 416번지 나. 사업의 종류:도시계획사업(도로) 명칭:쌍문동 416일대 도로개설공사</p>		<p>다. 사업시행규모:도로 B=15m, L=198m 라. 사업시행자:종로구 안국동 37 학교법인 덕성학원 이사장 박원국 마. 사업기간:당초 88.12.14~89.8.31 변경 88.12.14~91.8.30 바. 변경내용:사업기간 연장 ●도봉구고시제17호 정정고시 시보 제1521호(90.10.25)에 게재된 도봉구고시 제138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내용중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1991. 6. . 도 봉 구 청 장</p>	

1. 사업명칭:미아2동 867-791간 도로개설공사		2. 정정내용:별첨	
정 정 내 용			
오		정	
사업시행지	미아동791-3266~867-114	미아동 791-2809~867-117	
규 모	B=6~8m L=270m	B=6m L=260m	
지갈물 조서			
	소재지	물건명	수 량
	미아동 834	현대저물포	영업손실 1식
	미아동 834-15	리브가양품	"
	미아동 834	서울고무상회	"
			소유자
			미아동 776-8 오재현
			미아동 226-3 최미영
			미아동 834 흥태락

○ 이하는 전과 같습니다.

●구로구고시제27호
도시계획사업(도로및하수도)
실시계획변경인가

- 서울특별시 구로구고시 제23호(91.6.14)로 실시계획 인가한 도시계획사업(도로 및 하수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하였기에
- 도시계획법 제26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권한위임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토목과와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1.6.

· 당초:구로구청장 변경: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서울특별시구로구청~경인로간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구로구청~경인로간 도로개설공사(변동없음)
다. 사업규모:도로포장 B=35m, L=60m (변동없음)

하수도(D=600㎜), L=120m(변동없음)
라. 사업시행자:당초-구로구청장, 변경-서울특별시장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인가일-91.12.31(변동없음)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별첨 토지조서(변동없음)
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인 주소·성명:별첨 토지 및 건물조서(변동없음)
참부:토지 및 건물조서 각 1부(변동없음)

구 공 고

●송파구공고제64호
주택건설·대지조성등록업자
영업정지해제공고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 등록업자와 대하여 영업정지 해제하고, 동법시행령 제10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해제 대상업체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계 지	영 업 정지기간	영 업 제개일	관련근거	
1	84-21-2	(㉸)우건토건	최 중 규	삼전동 1-1	91.3.20 ~6.19	91.6.20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0조 의3	
2	88-21-6	(㉸)태환건설	유 환 배	중남동 394-15	"	"	"	
3	88-21-6	새원산업개발(㉸)	박 도 준	잠실 40-1	"	"	"	
4	88-21-8	(㉸)전원건설	김 무 열	송파 84-3	"	"	"	
<p>1991.6.19 송 파 구 청 장</p> <p>●영등포구공고제72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p>					<p>건설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문건설업의 양도를 인가하였 기에 동시행령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 여 이를 공고합니다.</p> <p>1991.6.19 영 등 포 구 청 장</p>			
인 가 일 자		양도업종및 면허번호	양 도 자			양 수 자		
		상 호	소 계 지	대표자	상 호	소 계 지	대표자	
91.6.19	창호공사업 (82-08-65)	원강물산(㉸)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5	김 진 문	세화건설	부산시 북구 구포 32블럭 11-3롯데	노 개 실	
<p>●마포구공고제76호 도시계획안공람공고</p> <p>1. 우리구에서 도시계획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안에 대하 여 같은 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입안에 반영하기 위하여 아 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14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p>					<p>2. 본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마포구청 도 시경비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람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공람장소:마포구청 도시경비과(전화 330-2385) 다. 관련도서:공람장소 비치도면과 같음</p> <p>1991.6.25 마 포 구 청 장</p>			
도 시 계 획 안								
연번	구분	시설명	종류	구별	폭원(m)	연장(m)	시 점	종 점
1	신설	도로	소로	2	8	75	망원동 396-9	망원동 396-29
2	"	"	"	3	6	138	망원동 394-55	망원동 394-86
3	"	"	"	3	6	188	망원동 401-4	망원동 401-31
4	"	"	"	3	6	123	토정동 6-98	토정동 6-23
5	"	"	"	3	6	120	아현동 635-76	아현동 632-16

연번	구분	시설명	종류	구분	폭원(m)	연장(m)	시 점	종 점
6	신설	도로	수로	3	6	107	아현동 628-4	아현동 628-17
7	"	"	"	3	6	54	아현동 604-22	아현동 604-3
8	"	"	"	3	6	110	아현동 625-1	아현동 623-53
9	"	"	"	2	8	33	염리동 14-203	염리동 14-214
10	"	"	"	3	6	142	노고산동 19-13	노고산동 12-16
11	"	"	"	3	6	77	노고산동 4-1	노고산동 4-119
12	"	"	"	3	6	91	대흥동 20-53	대흥동 20-37
13	기정	"	중로	1	17.25	2,100	연남동 219-1	서교동 444
	변경	"	"	1	"	"	"	"
	기정	"	"	1	20	750	망원동 458	망원동 망원유수
14	변경	"	"	1	20	"	"	지

연번	구분	시설명	위치	규모(m ²)	비 고
15	신설	방수설비	당인동 72일대(서울화력발전소 내)	3,812.7	당인 우수배제펌프장 부지
16	신설	방수설비	성산동 96-9일대(홍제천 하류유안)	723.7	성산2 우수배제펌프장 부지

- * 연번1~연번12 도시계획시설(도로) 신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지구 내 미개설 도로에 대한 입안
- * 연번13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은 연남동 224-36, 225-35, 229-67, 동교동 206-13, 서교동 351-1, 445-4, 459-7, 466-1, 467-3, 444-1 등 10개 필지의 각각 전채변 길이 변경입안
- * 연번14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은 망원동 458-62의 각각 전채변 길이 변경입안

●성북구공고제77호
돈암2-2지구주택개발재개발사업
공사완료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909호(85.12.18)로 사업시행인가된 돈암2지구 주택개발 재개발공사가 준공처리되었기 도시개발법 제48조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1991.6.13
 성 북 구 청 장

- 공 고 내 용
- 가. 사업명칭: 돈암2-2지구 주택개발 재개발사업
 - 나. 시행자: 성북구 돈암동 5-142 돈암2-2지구 재개발조합 조합장 조창기
 - 다. 사업기간: 1987.12.12~1991.5.31
 - 라. 사업계획에 의한 공중필 공사내역
 - 건축시설
 - 규모: 아파트 8~15층 6개동 619세대 상가 지상2층 1동
 - 건축면적: 4,728.66㎡(전매율 25.46%)
 - 건축연면적: 56,586.83㎡(용적률 260.48%)
 - 토지
 - 대지면적: 18,576.0㎡(5,619평)
 - 공공시설: 1,401㎡(대지면적에 포함)
 - 마. 사업비 재원별 내역(생략)

●노원구공고제177호

부기과열지구지정공고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13조의1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부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1991.6.
노 원 구 청 장

- 다 음 -
1. 지정구역:노원구 중계동 제2백자개발지구 11-2블럭
 2. 토지면적:32,110㎡
 3. 아파트명:중계동 한신, 동성아파트
 4. 사업규모:아파트 15층 6개동 498세대
 5. 사업주체:한신공영(주) 박명남
(주) 동 성 최병석

사 령

지방별정직 6급상당이하 공무원 위원면직(일반직 복제)

●1991년 6월 19일자

일 제209호

성 명	발령사함	원 부 서	직 급
한인우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전 산 담 당 관	지방별정직 6급상당
오근중	"	전 자 계 산 소	"
노영숙	"	"	"
신정수	"	"	"
신경만	"	"	"
김태근	"	시험체육시설관리사업소	"
문상조	"	경찰국 면허과	"
정순종	"	"	"
윤정만	"	"	"
김현규	"	"	"
최희려	"	전 산 담 당 과	지방별정직 7급상당
김안철	"	전 인 사 과	"
이강욱	"	전 자 계 산 소	"
윤영선	"	"	"
천윤순	"	"	"
정송희	"	"	"
송희승	"	시험체육시설관리사업소	"
김희의	"	경찰국 면허과	"
나기범	"	"	"
김동발	"	"	"
조승호	"	"	"
권이태	"	경찰국 교통과	"
김명은	"	통 계 담 당 과	지방별정직 8급상당
이동일	"	지 회	"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배현숙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지 적 과	지방별정직 8급 상당
안효무	"	시 립 대 학 교	"
조윤석	"	"	"
하순자	"	전 자 계 산 소	"
윤미숙	"	"	"
정재욱	"	"	"
김현아	"	"	"
박종윤	"	"	"
김은숙	"	"	"
민화영	"	"	"
박영규	"	"	"
정해경	"	"	"
안인숙	"	"	"
정광근	"	"	"
정향수	"	"	"
남궁순옥	"	"	"
황금영	"	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	"
정수현	"	"	"
홍연화	"	"	"
이준연	"	경 찰 국 교 통 과	"
임문자	"	"	"
김옥희	"	"	"
전충권	"	경 찰 국 면 허 과	"
김명연	"	"	지방별정직 9급 상당
정인환	"	"	"
한상호	"	전 자 계 산 소	지방별정직 7급 상당
류근화	"	"	지방별정직 8급 상당

기능직공무원 신규일동

●1991년 6월 24일자

영 제210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김명호	지방전기원시보(8등급)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신 규
배지환	시외회 사무국 근무를 명함	"
	지방기계원(영사)시보(10등급)에 임함 2호봉을 급함	
윤인수	시외회 사무국 근무를 명함	"
	지방통신원시보(10등급)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시외회 사무국 근무를 명함	

성 명	발령사항	원부서
송 상 목	지방방호원(방호:10등급)에 임함 13호봉을 급함 총무과 근무를 명함	신 규
이 남 영	지방방호원(방호)시보(10등급)에 임함 3호봉을 급함 근로자회관 근무를 명함	.
장 희 열	지방방호원(방호:10등급)에 임함 6호봉을 급함 시의회 사무국 근무를 명함	.
함 대 관	지방방호원(방호)시보(10등급)에 임함 2호봉을 급함 총무과 근무를 명함	.
김 정 식	지방방호원(방호)시보(10등급)에 임함 6호봉을 급함 총무과 근무를 명함	.
성 승 영	지방방호원(방호)시보(10등급)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시의회 사무국 근무를 명함	.
황 명 희	지방사무보조원(조무)시보(10등급)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총무과 근무를 명함	.
상 말 순	지방사무보조원(조무)시보(10등급)에 임함 1호봉을 급함 근로자회관 근무를 명함	.

6급이하 기술직 공무원 파견

1991년 6월 24일자

영 지211호

성 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 급
신 기 원	공원과(남산재모습찾기 사업추진반) 파견(91.6.24~별도거사시까지)	성 북 구	지방임업기사
신 수 용	.	영 등 포 구	지방임업기사보
허 도 행	.	구 로 구	.

기술직 공무원 신규임용(약무7급)

1991년 6월 24일자

영 제212호

성 명	발령사항	원부서
장 성 벽	지방약무기사보시보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총무과(의약과 실무수습) 근무를 명함	신 규

연구직 공무원 신규임용						
●1991. 6월 24일자						영 제213호
성 명	발령 사항					현 부 서
박 현 옥	지방학예연구소 시보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총무과(문화과 실무수습) 근무를 명함					신 규
7급이하 공무원 징계처분						
●1991년 6월 22일자						영 제214호
성 명	발령 사항			현 부 서	직 급	
박 장 현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의 하여 해임			도로계획과	지방토목기사보	
김 관 균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제2호에 의 하여 파면			총 무 과	지 방 운 전 원 (기능직10등급)	
지방전문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통보						
●1991년 6월 24일자						
성 명	생년월일	채용신분	근무부서	계약기간	비고	
이 재 준	58.2.16	지방전문직공무원 전임가급	수도기술연구소 기술개발부	90.4.1~ 93.3.31		
기능직 공무원 면직보고						
인비 번호	성 명	제 칭		현 직		
		부 서	직 위	직 급	부 서	직 위
1	이 덕 영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동부건설 사업소	지방기계원	기능10등급
공무 국외여행 열람통보						
여 행 자			여 행 국	여행기간	여행경비	여 행 목 적
소 속	직 명	성 명				
사회과 종합건설 본부	지방서기관 지방건축 기사보	이서용 국승열	일본, 대만 태국, 싱가포르	91.7.1 ~7.12 (12일간)	시 비 (8,850불)	외국의 장교제도와 납골당 시설관련 자 료수집, 시립장재장 내 납골당 건립 활 용
문화재과	서 기 관 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주사	김근배 최규종 인길수	자유중국	91.7.3 ~7.7 (5일간)	시 비 (2,725불)	91. 우호자매도시 교 류사업의 일환으로 대북시 문화계 보존 관리정책 및 실태 비교연구

소 속	행 자		여 행 국	여행기간	여행경비	여 행 목 적
	직 명	성 명				
상 공 파	지방행정 사무관	김재전	네델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91.6.26 ~7.7 (12일간)	시 비 (4,915불)	제31회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참관 및 기능인 육성 시책조사
심사분석 담당관	서 기 관	김순직	일 본	91.7.15 ~7.22 (7일간)	시 비 (6,687불)	91. 우호자매도시교류 사업 일환으로 동경도 및 구의 재정 운용 및 민자유치방안, 금고업 무 처리실태와 전산화 물 연구, 시정발전기여 및 양도시간 우호 증진
예산담당관	지방행정 사무관	최항도				
투자관리 담당관	지방행정	김상수				
세무지도과 전산계산소	지방행정주사 지방전문직 "라"급	김인수 박미자				
환경녹지국 공원과	이 사 관 지방임업기과	김동일 최용호	일 본	91.6.30 ~7.6 (7일간)	시 비 (2,789불)	아시아 태평양 국제환경 경회의 참석 및 공원관 리상태 비교분석

공무 국외여행 명령통보(변경)

소 속	행 자		여 행 국	여행기간	여행경비	여 행 목 적
	직 명	성 명				
상수도 사업본부	지방수도 토목기과	윤석우	프 랑 스	91.6.22 ~7.8 (17일간)	프랑스기술 산업협력청 부담	선진외국의 상수도 우수방 식 및 시설관의 실태조사